

'00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조사지침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정보, 문화,〕
— 지식기반산업 통계조사 포함 —

2001. 6

통계청도서실



B0031577



통 계 청

310, 111
2140
42000



'00년 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조사 지침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정보, 문화,
지식기반산업통계 조사 포함〕

2001. 6

B31577



통 계 청

목 차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연혁	1
3. 법적근거	1
4. 조사시기	1
5. 조사범위 및 대상	1
6. 결과공표 및 추정단위	5
7. 표본설계	5
8. 조사표 및 조사항목	7
9. 조사체계	8
10. 조사방법	8
11. 결과공표	8
12. 금회조사의 주요 특징	8
13. 조사결과의 활용	11
II. 주요업무 일정	12
1. 조사준비 및 교육	12
2. 본조사 및 실사지도	12
3. 조사표 내용검토 및 보완	12
4. 조사표 전산입력	12
5.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 입력자료 제출	13
6. 조사표 제출	13
III. 사업체 정의 및 산업분류 결정방법	14
1. 사업체 정의	14
2. 산업분류 결정방법	14

IV. 조사시 유의사항	17
1. 조사지침서 숙지	17
2. 유의사항	17
V. 조사대상 사업체명부확인·보완요령	19
1. 필요성	19
2. 사업체명부 종류	19
3. 사업체명부의 구성내용	20
4. 확인 및 보완 요령	20
5. 사업체 대체	22
6. 사업체명부 확인·보완시 고려사항	23
7. 행정사항	23
VI. 조사표 작성방법	24
A. 도·소매업 통계조사표(Ⅰ)	24
B. 도·소매업 통계조사표(Ⅱ)	39
C. 서비스업 통계조사표	48
VII. 조사표 검토 및 제출	66
1. 조사표 검토요령	66
2. 조사표 정리 및 제출	69
부 록	
1. 용어 해설	73
2. 조사표와 결산서 연관관계	76
3. 세금과 공과	84
4. 조사사례	90
5. 조사표	105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부문 조사대상 년도의 경영구조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조사연혁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 1988년 최초 조사 이래 13회째 조사
- 정보산업통계 : 1998년 최초 조사 이래 4회째 조사
- 문화산업통계 : 2000년 최초 조사 이래 2회째 조사
- 지식기반산업통계 : 2001년에 처음조사

3. 법적근거

- 도소매업통계조사(지정통계 제 10126호)
- 서비스업통계조사(지정통계 제 10127호)
- 정보산업통계(일반통계 제10151호)
- 문화산업통계(일반통계 제10158호)
- 지식기반산업통계 : 2002년 1월중에 공식 통계승인 예정

4. 조사시기

- 조사 기준일 : 2000.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00. 1. 1 ~ 12. 31 (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01. 6. 21 ~ 7. 10 (기간 중 9~16일)

5. 조사범위 및 대상

가. 조사범위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 G. 도·소매업
 - 50. 자동차 판매업
 -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2. 소매업
 - H. 숙박·음식점업

- 551. 숙박업
- 552. 음식점업
- L.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 M. 사업서비스업(73. 연구개발업 제외)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 86. 사회복지사업
-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1. 회원단체 제외)
 -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 92. 수리업
 - 93. 기타 서비스업
- 정보산업 통계
 - 도소매 업종 중 다음 산업세세분류별 4개 업종
 - 51891 :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 51893 : 통신·정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 52514 : 통신기기 소매업
 - 52631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 문화산업 부문
 - 도소매 및 서비스업종 중 다음 산업세세분류에 속한 업종
 - 도·소매업관련 분야

5146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5147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52412 한복소매업
52513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5262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5266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52662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 서비스업관련 분야

71301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71302 서적 임대업
74510 광고대행업
74591 옥외광고업
74592 광고매체 판매업
74593 광고물 작성업
746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4602 제품 디자인업
74603 시각 디자인업
74604 기타 전문 디자인업
74911 인물사진 촬영업
74912 상업용사진 촬영업
74913 사진 처리업
7499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994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5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저업
87130 영화 배급업
87141 영화관 운영업
87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87311 공연시설 운영업

- 87321 연극단체
- 87322 무용 및 음악단체
- 87329 기타 공연단체
- 87341 공연 기획업
- 87342 배역 및 제작관련 대리업
- 87349 기타 공연관련 산업
- 88100 뉴스제공업
- 88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 88221 박물관 운영업
- 88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 88911 전자 게임장 운영업
- 8891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88913 노래방 운영업
- 88919 기타 오락장 운영업
- 88992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지식기반산업통계

- J. 통신업
 - 642. 전기통신업
- K. 금융 및 보험업
 - 65. 금융업
 - 66. 보험 및 연금업
 -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L.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 M. 사업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73. 연구개발업

-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O. 교육서비스업
 - 80. 교육서비스업
-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 86. 사회복지사업
-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1. 회원단체 제외)
 - 90.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 92. 수리업
 - 93. 기타 서비스업

나. 조사대상

· 조사범위의 사업체 중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사업체

6. 결과공표 및 추정단위

통계조사	지역단위		산업분류 단위	
	전 국	16개 시·도	대·중·소분류	세세분류
도소매 및 서비스업	○	○	○	-
-백화점, 호텔업	○	○	○	○
정보산업 <small>전자전자공업</small>	○	○	-	○
문화산업	○	-	-	○
지식기반산업	○	-	○	-

7. 표본설계

가. 모집단 및 표본틀

- 모집단
 - 2000. 12. 31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대분류 중 G, H, J, K, L, M, O, P, Q, R 부분의 사업체
- 표본틀
 - '99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 모집단에 속하는 사업체
- 나. 표본추출방법
 - <도소매 및 서비스업>
 - 전수조사업종
 - 백화점(52111), 호텔(55111)
 - 산업소분류 및 시·도별 모집단 사업체수가 11개 미만인 업종
 - 전수조사업종을 제외한 자료에서 산업소분류 및 16개 시·도별로 부차모집단(sub-population)을 설정한 후 종사자수를 특성치로 한 응용절사법에 따라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층화하여 표본사업체 선정
 - 표본층에서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체는 전수층 표본으로 채택
 - <정보산업>
 - 전수조사 업종
 - 산업세세분류 및 시·도별 모집단 사업체수가 31개 미만인 업종
 - 정보산업 관련 4개 산업세세분류업종 및 16개 시도별로 부차모집단을 설정한 후 종사자수를 특성치로 한 응용절사법을 이용하여 표본사업체 선정
 - 표본층에서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체는 전수층 표본으로 채택
 - <문화산업>
 - 산업세세분류별로 부차모집단을 설정한 후 종사자수를 특성치로 한 응용절사법에 따라 전수층과 표본층으로 층화하여 표본사업체 선정
 - 표본층에서 매출액이 100억이상인 사업체는 전수층 표본으로 채택
 - <지식기반산업>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부문과 중복되는 산업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표본 추출방법과 동일
 - 산업소분류별로 부차모집단을 설정한 후 종사자수를 특성치로 한 응용절사법을 이용하여 표본사업체 선정
 - 표본층에서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체는 전수층 표본으로 채택
- 단, 산업소분류 641, 651, 659, 660, 803은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체를 전수층 표본으로 채택

다. 모집단수 및 표본수

(단위 : 개, %)

조사명	모집단수	표본계				
		전수조사	전수층	표본	추출률(%)	
계	3,182,303 (중복제거:2,272,977)	74,662 (중복제거: 51,275)	2,234	33,365	39,063	1.2
도소매 및 서비스업	2,124,518	45,301	1,558	19,962	23,781	1.1
중복	909,326	23,387				
정보산업	22,135	3,025	198	1,215	1,612	7.7
중복	22,135	3,025				
문화산업	141,736	3,882	-	1,681	2,201	1.5
중복	141,736	964				
지식기반산업	893,914	22,454	478	10,507	11,469	1.3
중복	745,455	19,398	478	8,623	10,297	1.4
비중복	148,459	3,056	-	1,884	1,172	0.7

※ 중복은 도소매 및 서비스업과 정보산업, 도소매 및 서비스업과 문화산업, 도소매 및 서비스업과 지식기반산업 사업체간의 중복임

8. 조사표 및 조사항목

가. 조사표

- 종류 : 3종
 - 도·소매업통계 조사표 I (G)
 - 도·소매업통계 조사표 II (H)

- 서비스업통계 조사표(J, K, L, M, O, P, Q, R)

나. 조사항목 : 총32개 항목

○ 공통항목(20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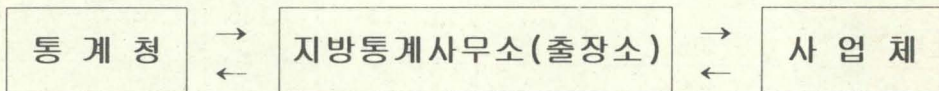
- ①사업체명, ②대표전화번호, ③소재지, ④인터넷주소, ⑤주요사업내용, ⑥취급상품명(제공용역내용), ⑦조직형태, ⑧연간영업기간, ⑨일일영업시간, ⑩사업체정기휴무일수, ⑪종사자수, ⑫연간급여액, ⑬매출액, ⑭매출원가, ⑮판매비와 관리비, ⑯영업이익, ⑰납부부가가치세, ⑱수입임대료, ⑲사업체건물연면적, ⑳전세·보증금

○ 도·소매업통계조사표(I) : 매장면적, 판매관리기기보유대수

○ 도·소매업통계조사표(II) : 객실·석수, 객실이용자수, 편의시설연면적

○ 서비스업통계조사표 : 직능별종사자수, 전산장비보유대수, 정보통신기술 활용도, 직종 및 학력별 종사자수,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유형고정자산, 무형자산

9. 조사체계



10. 조사방법

지방통계사무(출장)소 직원과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한 타계식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자계식조사 가능

11. 결과공표

○ 결과공표 : 2001. 12월

○ 보고서 발간 :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I,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II, 서비스업통계조사보고서 III 각 800부씩 발행

* 동조사에 부가하여 실시하는 정보, 문화, 지식기반산업통계조사 결과는 별도 공표 추진

12. 금회조사의 주요 특징

○ 『지식기반산업통계』 작성의 조사부문을 동 조사에 부가 실시

-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사무소의 경우 임시조사원이 조사한 조사표는 본청에서 직접입력

⇒ 서울 사무소의 임시조사원이 조사한 4,300여개의 사업체를 본청에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서울사무소의 업무 부담

13. 조사결과의 활용

- 도소매업, 음식·숙박점업, 서비스업 GDP추계 기초자료
- 유통산업 및 서비스업 발전계획 수립
- 시장 현황 분석
- 산업분석 기초자료
- 지역의 구매력측정, 운용비용측정, 점포개발시 참고자료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본현황파악 및 지원정책수립 기초자료
- 관련업종 회원 들에 대한 정보제공
- 정부 정책 건의 자료
- 각종 연구소와 교육기관 및 개인의 연구자료
- 기업과 개인의 사업계획 수립
- 국제간 비교자료

II. 주요업무 일정

1. 조사준비 및 교육(5. 9~6. 20)

가. 조사준비물

- 실사용명부, 대체용명부(전산파일형태)
- 조사표(3종), 조사표 표지, 절사점표, 인사장, 임시조사원증
- 조사지침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나. 임시조사원 및 지도원, 입력요원 모집

- 모집인원 및 채용기간 : 사무(출장)소별 배정된 인원 및 채용기간
- 선발기준 : 임시조사원 통합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침(통계청 훈령 제81호)

다. 교육실시

- 대 상 : 지방사무(출장)소 조사담당직원 및 임시조사원, 임시지도원
- 내 용 : 조사지침서 설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용법, 실시계획 및 조사관련사항 등
- 방 법 : 본청 담당직원에 의한 순회교육

2. 본조사 및 실사지도(6. 21~7. 10)

-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책임 있는 응답자에게 조사취지 설명 및 조사협조를 부탁하여 조사표 작성
- 책임있는 응답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 방문하여 조사
- 자계식 조사가 가능한 결산사업체는 항목별 작성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표 회수기일을 약속한 후 재 방문하여 조사표 회수
- 조사표는 현장에서 검토한 후 기입누락이나 착오사항을 보완
- 실사지도는 본청 및 지방사무소 합동으로 실시

3. 조사표 내용검토 및 보완(6. 21~7. 28)

- 조사표 내용검토는 조사담당자가 하고, 임시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 내용검토는 지도원 및 입력요원이 담당
- 내용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부실조사표는 반드시 보완

4. 조사표 전산입력

- 가. 기간 : 6. 21 ~ 7. 28(38일간)

나. 입력조사표

○ 도소매업통계조사표(I, II) 및 서비스업통계조사표

다. 입력자 : 조사표는 조사담당자가 입력하되, 임시조사원이 조사한
조사표는 입력요원을 채용하여 조사표를 입력

5.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 입력자료 제출

가. 기간 : 7. 30(월) ~ 7. 31(화)

나. 방법 : 사무(출장)소 단위로 개인별 입력자료를 통합한 후 입력프로그램(FTP방식)을 활용하여 본청(전산개발과 PC서버)으로 송신

6. 조사표 제출

가. 조사표의 정리 및 편철

○ 사무소, 출장소별 사업체번호순으로 편철

- 조사표편철 기준

· 사무소 : 산업중분류별

· 출장소 : 산업대분류

· 중(대)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수가 100개를 초과할 경우 권당
조사표 100매를 기준으로 편철.

나. 제출

○ 사무소 별로 제출

○ 기간 : 11. 6 ~ 11. 11(6일간)

- 업무추진상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지참 제출

Ⅲ. 사업체 정의 및 산업분류 결정방법

1. 사업체 정의

가. 조사대상 사업체의 정의

경영주체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재화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일정한 장소

나. 조사대상 사업체의 구분방법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보며, 2인 이상의 사업주도 동일 경영주로 간주한다.

○ 장소에 의한 구분

동일 경영주가 서로 다른 장소에 공장, 지사(점), 분점, 영업소, 출장소 등의 사업체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영주체에 의한 구분

동일한 건물이나 사무소에서 서로 다른 경영주가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영장부 유무에 따른 구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경영주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장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나, 경영장부는 없으나 요금계산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산업분류 결정방법

가. 산업분류는 제8차 개정(2000. 1. 7 통계청고시 제 2000-1호)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세세분류(5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산업분류 결정 원칙

○ 생산단위(사업체)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

○ 주된 산업활동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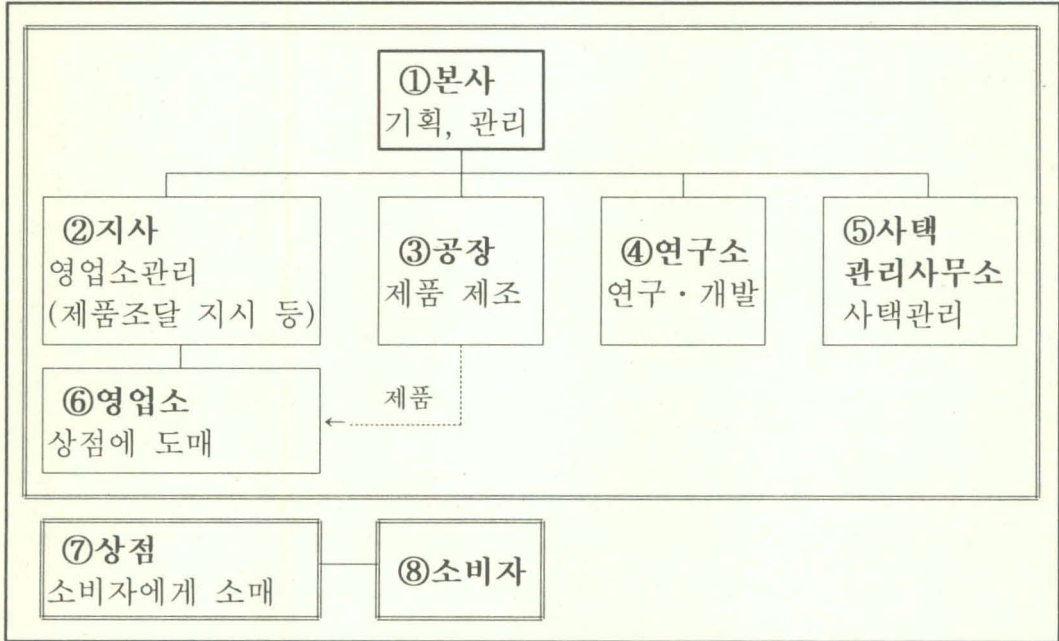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해 결정.

○ 산업분류 단계 항목 결정 순서

최상급 분류단계인 대분류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 세세 분류를 결정한다.

【예】 제조, 도매, 소매 등을 겸하고 있는 경우



- ① 본사는 산하사업체가 제품의 제조와 도매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 산업활동을 제품제조로 보아 「제조업」으로 분류
- ② 지사는 도매업을 수행하는 영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산하사업체가 제품의 제조와 도매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주산업활동을 제품 제조로 보아 「제조업」으로 분류
- ③ 공장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으로 분류
- ④ 연구소는 신제품의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구 및 개발업」으로 분류
- ⑤ 사택관리 사무소는 사택이 아파트나 맨션 등과 같이 가정생활을 영

위하도록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관리는 부동산관리업으로 「주거용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

- ⑥ 영업소는 공장에서 제품을 받아서 상점에 도매하고 있으므로 「도매업」으로 분류
- ⑦ 상점은 영업소에서 제품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소매하고 있으므로 「소매업」으로 분류

※ 백화점 및 호텔업

○ 백화점(52111)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대규모 소매점으로 허가된 사업체중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고, 직영율(직영매장+특정 매입매장의 비율)이 50%이상인 사업체(※ 단, '95.7월 이후 개설한 백화점은 매장 면적이 4,000㎡ 이상이고 직영율이 30%이상인 사업체)

$$\text{직영율} = (\text{직영매장} + \text{특정매입매장}) / \text{전체매장} \times 100$$

〈 백화점 운영형태별 매장의 종류 〉

- ▶ 직 영 매 장 : 백화점 경영주가 상품의 구매, 판매, 관리 등을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운영하는 매장
- ▶ 특정매입매장 :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의 구입, 재고, 판매 등을 백화점 경영주가 직접 관리하여 주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 를 받는 매장 (주로 계약업체에서 점원을 파견)
- ▶ 임대(갑)매장 : 전세금을 받고 임대한 매장
- ▶ 임대(을)매장 :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로 받고 임대한 매장

○ 호텔(5511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호텔업을 운영하는 사업체

-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업은 관광호텔, 해상관광호텔, 국민호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 등이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은 회원제숙박업임
- ▶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호텔업은 30실 이상의 객실과 일정 조건을 갖춘 일 반호텔을 말함

IV. 조사시 유의사항

1. 조사지침서 숙지

- 조사지침서 및 산업분류를 충분히 숙지하여 현장조사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스스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서비스업통계과에 질의 후 처리한다.

2. 유의사항

가. 탁상조사 및 대리조사 금지

- 사업체를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거나, 과거 자료, 관련단체의 자료 및 기타 별도의 자료를 이용한 탁상조사는 절대 금지한다.
- 조사담당자가 아닌 사람은 조사를 할 수 없으며, 임시조사원이 교체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지침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를 담당하게 한다.

나. 사업체 비밀보호

- 사업체 조사과정에서 숙지한 내용은 통계법(제13조)에 따라 타인에게 절대로 누설 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면접방법

- 사업체의 방문시간은 사업체의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사업체 방문시에는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대표자나 실무자(회계 또는 경리부서)를 만나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본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표를 작성한다.
- 응답자가 조사표를 직접 작성(자계식 조사)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조사표를 배부하고, 작성 중 질의할 사항이 있거나 작성 후 우송할 경우를 고려하여 반드시 **조사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응답자에게 알려주고 회수일을 약속한다.

라. 불응 사업체

- 조사의 목적, 법적 근거, 결과자료의 용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조사된 내용은 법적으로 비밀보호가 규정되어 있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실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세금과는 전혀 관계 없이 순수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한다.
-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업통계과에 통보 후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마. 사업체 재방문

- 대표자나 실무책임자가 부재중이거나 면담이 곤란한 경우 면담 가능일시를 약속한 후 재방문하여 조사한다.
- 조사표 회수시에는 기입누락이나 착오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용검토 중 기입누락이나 착오사항이 발견되면 자의적으로 추정·작성하지 말고 반드시 사업체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보완한다.

바.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입한다.

사. 조사항목의 수치는 1, 2, 3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소숫점 단위 미만의 수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한다.

예) 18.7평 → 19평, 34.4% → 34%

아.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칼로 긁거나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복선(=)을 그어 수정한다.

예) 해당 숫자가 18인데 15로 잘못 기입한 경우 → ~~18~~15

자. 조사표의 어떤 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관련되는 항목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조사한 내용이 타당하도록 유의한다.

예) 종사자수 10명 → 20명, 인건비나 급여액이 적정한지 검토

차. 2000. 1. 1 ~ 2000. 12. 31 까지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하되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사업체는 최근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실적을 조사한다.

카. 완료된 조사표는 착오기입, 항목누락, 관련항목간 계수불일치 등이 없는지 재확인한다.

V. 조사대상 사업체명부확인 · 보완요령

1. 필요성

- 조사대상사업체 명부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대상사업체의 누락이나 중복 등을 방지하고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구역별로 정리한 기초 자료(조사대상사업체 목록)임.
- 그러나 조사대상사업체는 휴업·폐업·신규·주소이전(전출·전입)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 조사대상사업체 명부는 '99년기준으로 2000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와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됨

2. 사업체명부 종류

2000년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용 사업체 명부에는 크게 실사용과 대체용 명부

가. 실사용 명부

- 본 청에서 제공하는 명부이며 이를 확인·보완하여 본 조사기간 중 실제조사용 명부로 활용됨
- 입력자료 제출시 조사표 내용과 함께 본청으로 송신.

나. 대체용 명부

- 동 조사의 표본층 사업체 유고시 대체하기 위한 사업체 명부를 말하며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용, 부가조사(정보산업, 문화산업, 지식기반산업)통계용으로 구분됨

3. 사업체명부의 구성내용

가. 실사용 명부

사무소코드	일련번호	행정구역	산업분류	표번호		사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종사자수	매출액	그룹번호		확인	담당자 ID	사업체구분	본사명	본사전번호	본사전화번호	본사주소	고유번호	
				통계	부가						통계	부가									

※ 통계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를 뜻함

※ 부가 : 정보산업, 문화산업, 지식기반산업을 뜻함

※ 표번호 구성 : 2자리로 구성

①	②
---	---

① 통계조사별 식별부호

- 1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
- 2 : 정보통신산업통계
- 3 : 문화산업통계
- 4 : 지식기반통계

② 표본사업체의 식별부호

- 1 : 전수조사업종 사업체
- 2 : 전수층 사업체
- 3 : 표본층 사업체

【예】 통계의 경우 13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1) 중 표본층사업체(3)
 부가의 경우 42 : 지식기반통계(4) 중 전수층사업체(2)

나. 대체용 명부

사무소코드	행정구역	산업분류	표번호		사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종사자수	매출액	그룹번호		확인	담당자 ID	사업체구분	본사명	본사전번호	본사전화번호	본사주소	고유번호	
			통계	부가						통계	부가									

※ 통계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를 뜻함

※ 부가 : 정보산업, 문화산업, 지식기반산업을 뜻함

4. 확인 및 보완 요령

가. 사업체확인 · 보완 요령

- 사업체의 변동 유무에 따라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입력 프로그램」 실사용명부의 확인란에 해당되는 변동부호를 입력한다.
- 조사기간 중 변동이 없는 사업체는 0을 입력한다.

- 대체 또는 신규로 추가된 사업체는 증가에 해당하는 부호(1, 2)를 입력한다.
- 신규로 추가된 사업체는 사업체명부 마지막 행에 명부 각항목을 입력한다 (사업체번호는 자동생성)
- 사업체의 유고 등 감소사유는 감소에 해당되는 변동부호(3, 4, 5)을 입력하며 표본층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감소할 경우에는 대체요령에 따라 대체하여야 한다.
- 표본번호 유형별 유고사업체 보완 요령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정보·문화산업	요령
전수조사업종 또는 전수층	전수조사업종 또는 전수층	조사제외
전수조사업종 또는 전수층	표본층	도소매·서비스업은 조사제외, 정보·문화산업은 대체
표본층	전수조사업종 또는 전수층	도소매·서비스업은 대체, 정보·문화산업은 조사제외
표본층	표본층	대체

나. 변동부호.

변동내용	변동부호	변동내용의 정의	
변동 없음	0	- 사업체의 유고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	
증가	대체	1	- 표본사업체 중에서 유고가 발생하여 대체명부에서 추가한 사업체의 경우
	추가	2	- 전수업종 또는 전수층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포착하여 실사용명부에 새로 추가한 경우(전입 포함) - 단독사업체중 본사사업체로 판명된 경우
감소	휴·폐업	3	- 실사용명부에 등재된 사업체로 휴·폐업되어 조사할 수 없는 경우 - 소재불명으로 사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전출 포함)
	대상의	4	- 사업체 확인 결과 산업분류가 상이한 경우로 · 전수층 또는 전수업종인 경우 부호만 기입 · 표본층인 경우 명부에 감소부호 기입 후 조사제외 후 대체용명부에서 대체사업체를 실사용명부에 등재하고 증가부호 기입 후 조사 - 사업체구분 변경시 · 본사사업체명부상의 사업체가 본사가 아닌 경우 · 단독사업체명부상의 사업체가 본사나 지사인 경우
	중복	5	- 사업체명부상 이중으로 등재된 1개 사업체 - 두 개의 표본사업체 중 하나로 합병된 사업체

5. 사업체 대체

가. 대상 : 표본층사업체

나. 사유

- 휴·폐업, 이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중복사업체
- 조사대상외

다. 대체기준

① 동일산업분류

② 동일지역(특별시,광역시,도단위)

③ 동일 그룹번호

내에서 대체

※ ① 동일산업분류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는 시·도별 산업소분류 기준으로 대체
- 정보산업부문사업체의 경우 시·도별 산업세세분류 기준으로 대체
- 문화산업부문 사업체의 경우 사무소별 산업세세분류 기준으로 대체
- 지식기반산업부문 사업체의 경우 사무소별 산업소분류 기준으로 대체

※ 동일그룹(산업분류) 내에서 종사자수(동일종사자의 경우 매출액) 순으로 가장 유사한 사업체로 대체하되, 동 그룹 내에서 대체사업체가 없을 경우 인접그룹 내의 사업체중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사업체로 대체

※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업통계과에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

라. 조사부문별 중복사업체 대체 요령

- 중복형태

① 도소매 및 서비스업과 정보산업사업체 중복

② 도소매 및 서비스업과 문화산업사업체 중복

- 대체 유형 및 요령

도소매 및 서비스업	정보·문화산업	대체요령
표본층	전수조사업종 또는 전수층	도소매 및 서비스업사업체를 기준으로 대체
전수조사업종 또는 전수층	표본층	정보·문화산업사업체를 기준으로 대체
표본층	표본층	정보·문화산업사업체를 기준으로 대체

6. 사업체명부 확인·보완시 고려사항

- 전수조사업종과 전수층의 경우 조사대상사업체 명부에서 누락된 사업체의 발굴에 각별한 노력 필요
 - 이를 위해 서비스업과에서는 『99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자료 중 2000년 신설업체를 표본틀에 포함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음
 - 아울러 사무소 차원에서도 지방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등 누락사업체의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7. 행정사항

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입력프로그램 및 실사용명부 수신(지방사무소)

- 본청 전산개발과 PC서버에 접속하여 File Down load
 - 각 도사무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담당자 : 입력프로그램 및 실사용 명부를 Down 받은 후 사무소, 출장소별로 해당 사업체 명부 File로 분할, 작성하여 출장소로 송부
 - 조사담당직원(조사표입력요원 포함) : 입력프로그램을 Down 받은 후 각 PC에 설치

나. 본청에 사업체 명부확인 보완 결과를 보고(제출)할때

- 사무소 단위로 입력프로그램의 자료통합 기능을 활용하여 실사용명부를 통합한 후 자료송신 기능을 활용하여 본청 전산개발과 PC서버로 송신
- ※ 조사표 입력자료 제출 방법도 동일함.

VI. 조사표 작성방법

A.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

(자동차판매·도매업·소매업)

난 외 사 항

사업체번호	행정구역	산업분류부호	표본번호		담당자ID
			도소매서비스	부가조사	

※ 위표는 조사자가 작성

1. 사업체번호

시도별 행정구역 산업분류부호순의 번호가 부여된 고유번호이며 실사용 명부의 일련번호를 이기한다.

2. 행정구역

행정구역분류부호 7자리 중 시·도부호 2자리만 기입하되 실사용명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3. 산업분류부호

사업체의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7 개정』 책자를 통해 사업내용과 일치하는 산업분류부호 5자리를 기입한다.

4. 표본번호

○ 실사용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표본번호를 기입한다.

○ 표본번호 구분

구분	전수조사사업체	전수총사업체	표본총사업체
도소매업·서비스업	11	12	13
정보통신산업통계	21	22	23
문화산업통계	-	32	33
지식기반산업통계	-	42	43

5. 담당자 ID

○ 조사 담당자의 ID를 기입한다.

○ 임시조사원은 사무(출장)소에서 부여한 ID를 5자리로 기입

【예】 서울사무소 임시조사원 홍길동 : A0 T 18

A0 : 사무소코드

T : 임시조사원 식별부호

18 : 임시조사원명부상 일련번호

Ⅰ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_____	응답자
2. 대표전화번호 : (_____) _____ - _____	소속 :
3. 소재지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가·동·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빌딩·상가·시장 _____ 동 _____ 층 _____ 호	성명 :
4. 인터넷 주소(URL) : http://	

1. 사업체명

-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일정한 명칭이 없는 경우 주요취급상품명 및 사업형태를 기입한다.

【예】 『××(주) 대전영업소』, 『××백화점 잠실점』, 『야채소매』, 『생선가게』, 『00호텔』 등

-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법인명은 사업체명 앞이나 뒤에 (주), (자), (명), (유), (재), (사) 등과 같이 축약하여 기입한다.

2. 대표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예】 (0343) 789-0008

3. 소재지

- 시·도, 시·군·구 및 법정 읍·면·동명을 기입하고,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빌딩의 동·층·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4. 인터넷 주소(URL)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입

※ 위 (1.사업체명~3.소재지)사항이 실사용명부와 상이할 경우 입력프로그램의 실사용명부 내용을 수정한다.

2 사업내용(검업사업체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큰 순으로기입)

1. 주요사업 내용	%	2. 취급 상품명
①		
②		

○ 지난 1년간 사업체의 실적 중에서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내용과 가장 많이 취급한 상품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입한다.

【예】 제과점 → 직접 빵을 구워서 판매 또는 체인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
 우유소매업 → 매장에서 판매 또는 배달판매
 중고가구소매업 → 중고주방기구, 중고침대
 상품종합도매업 → 종합무역상사(자기상품)

○ 매출액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사자수나 시설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입하고 사업내용별 백분율(%)을 기입한다.

3 조직형태(해당번호에 √ 표시 할 것)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의 법인 ④ 비법인단체

① 개인사업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2인 이상이 공동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

※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리점이나 체인점 등은 본사의 상호를 사용할 경우라도 직영·비직영에 따라 지사(지점)와 개인사업체로 구분됨을 유의한다.

②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체로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 외국에 본사가 있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한 외국회사도 회사법인에 해당한다.

③ 회사이외의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 등이 포함된다.

【예】 농·수·축협, KBS방송공사, 시도의 사업소 등

④ 비법인단체

위 3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등이 포함된다.(경기후원단체, 후원회 등)

4] 영업기간

1. 연간영업기간 : _____개월 2. 일일영업시간 : (1) 개점시각 ; __시 __분 (2) 폐점시각 ; __시 __분
--

1. 연간 영업기간

- 2000. 1. 1 ~ 2000. 12. 31 까지 1년 동안에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개월수를 기입한다.
- 계절적 요인, 노동쟁의 및 기타요인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 영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기입한다.

2. 일일 영업시간

- 정상적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개·폐점시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적인 시각을 기입한다.
- 개·폐점시각이 없이 24시간 계속영업{체인화편의점(52122), 숙박업(551) 등}을 하는 경우는 일일영업시간을 00시00~24시00분으로 기입한다.
- 오후 시간은 12시를 더하여 주고(오후1시30분→13:30), 다음날 오전에 폐점하는 경우 폐점시각에 24시를 더해준다.

※ (폐점시각)-(개점시각)=영업시간(반드시 양수가 되도록 하고 2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함)

【예】 오후 6시30분에 개점하여 다음날 오전(새벽) 5시30분에 폐점하는 경우
⇒ 개점시간 18:30 폐점시간 27:30

5] 사업체 정기휴무일수(해당번호에√표시)

① 월1일 ② 월2일(주1일 포함) ③ 월3일 ④ 주1일 ⑤ 주2일 이상 ⑥ 휴무일 없음

○ 사업체가 지난 1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휴무한 날로

종사자의 휴무일이 아닌 해당 사업체의 휴무일을 말한다.

- 사업주나 종사자의 경·조사로 인한 휴무일, 사업체 창립기념일, 명절과 같은 부정기적인 휴무일은 제외한다.
- 근무자가 주·야간 혹은 3교대(8시간 근무)로 사업체가 연중 계속 영업을 할 경우에는 “⑥ 휴무일 없음”에 해당됨.

⑥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종사자수(명)			2. 연간급여액(원)					
	남	여	계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⑤]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	*	*	*	*	*
② 상 용									
③ 임 시									
④ 일 용									
⑤ 무 급				*	*	*	*	*	*

- 사업체의 2000년도 영업기간 중 평균종사자수(월평균 근무인원수)를 남·녀별, 종사형태별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임시 및 일용종사자수는 영업기간 중 1일 평균종사자를 기입한다.
 - ①,②항은 정상영업시간의 1/3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가자, 단기휴가자, 파업중인자 등은 포함하되 군복무자, 휴직자, 3개월 이상 장기결근자 등은 제외한다.
 - 본사(점)의 경우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의 종사자는 제외하고 본사(점)의 종사자만 기입하고 지사(점)의 경우는 본사(점)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해당 지사(점)의 종사자만 기입한다.
 - 지난 1년 중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휴업, 계절업 등)는 영업기간 중 평균종사자수(연중 연근무인원수/연중 영업일수)를 기입한다.

1. 종사자수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란 개인사업체의 소유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포함)
-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의 친인척으로서 정상영업시간의 1/3 (주당 18시간 이상)이상을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는 자(일정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용종사자)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종사자라 할지라도 영업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가족종사자에서 제외한다.

② 상용종사자

- 상용종사자는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口頭나 書面)을 맺고 근무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종사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한다.
- 견습사원, 아르바이트, 시간급종사자라도 상기 조건하에 근무하면 상용종사자로 분류한다.
- 보수를 받는 유급임원(사장, 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도 상용종사자에 포함된다.

③ 임시종사자

고용계약이 1개월이상 1년 미만인 종사자

④ 일용종사자

고용계약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 ③임시종사자와 ④일용종사자는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하고 영업기간중 1일 평균 종사자수를 기재한다.

특히 얼음 판매업, 스키장, 수영장 등과 같이 종사자 변동이 심한 계절업종의 일용 및 임시종사자 조사시 유의한다.

⑤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수수료 등을 받는 종사자를 말한다.
- 화장품, 서적, 우유배달, 신문배달 등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근무자는 무급종사자로 분류한다.
- ※백화점, 할인점 등의 **파견사원**은 모두 월급지급처 소속으로 조사하고, 임대매장의 종사자는 임차한 사업체 소속으로 조사한다.
- ※비법인 단체의 **회원**, 월평균 1/3이하 근무하는 **무급임원**, **명예직**, **주주** 등은 종사자에서 제외한다.

【예】 종사자수

㉠ 1년 중 6개월만 영업한 사업체의 종사자수

영업월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계
종사자수(명)	16	18	15	14	19	16	98

$(16+18+15+14+19+16) \div 6\text{개월} = 16.3 \Rightarrow$ 월평균 종사자수 16명

㉡ 1년 중 10개월 영업한 사업체가 1월, 2월, 4월, 9월, 10월에 일용종사자를 채용한 경우 일용종사자수

영업 월	1	2	3	4	5	6	9	10	11	12
근무기간(일)	3	4		6			10	2		
근무인원(명)	70	60		50			50	25		

$\{(3 \times 70) + (4 \times 60) + (6 \times 50) + (10 \times 50) + (2 \times 25)\} \div (10 \times 30) = 4.3$

\Rightarrow 영업기간 중 1일 평균종사자수 4명

2. 연간 급여액

- 지난 1년간(2000. 1. 1~2000. 12. 31) 유급임원, 상시종사자와 임시 및 일일종사자 등 유급종사자에게 각종 세금공제전에 지급한 급여총액으로 상여금, 각종수당, 현물급여 등 급여총액을 기재한다.
- 종사자수와 급여총액은 급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고, 특히 종사자 급여가 매출원가에 포함된 경우 누락·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2000년 이전에 체불된 급여액을 2000년에 지불한 금액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2000년도에 체불한 금액은 급여에 포함시킨다.
- 연간급여액은 종사자수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현물로 지급한 경우 자사 상품이면 매출원가, 구입품이면 매입가 또는 시가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7 사업실적 (종사자 4인이하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매출원가							
3. 판매비와 관리비 [①+②+③]							
① 인건비							
② 임차료							
③ 기타							
4. 영업이익 [1-2-3]							

1. 매출액

- 지난 1년간(2000. 1. 1~2000. 12. 31) 상품을 판매하고 획득한 매출총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 상품판매액
지난 1년간 상품을 판매하고 얻어진 매출액으로 다음의 경우는 상품판매로 본다.
 - ㉠ 상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을 때
 - ㉡ 외상이나 할부판매 또는 상품권 발행의 경우(발행시점이 아닌) 상품이 인도된 시점을 판매로 본다.

㉔ 백화점의 특정매입매장은 수수료가 아닌 상품판매의 총외형액을 기입해야 하며 임대매장의 매출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수료 수익액

백화점, 할인점 등 종합소매업의 임대매장 수수료 수익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기타 수익액

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익액은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다.

◆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익만 별도 기입(매출액<u>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u>)

2. 매출원가

상품구입, 재료비 등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3. 판매비와 관리비

상품판매 및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지출된 비용

① 인건비

급여(임원급여, 급여,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고용주가 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된다.

② 임차료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2000년도에 지급한 임차료 총액을 말한다.

③ 기타비용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및 상품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유지에 소요된 모든 비용

4. 영업이익

$$[\text{영업이익}] = [1. \text{매출액}] - [2. \text{매출원가}] - [3. \text{판매비와 관리비}]$$

※ 4인 이하의 사업체는 사업실적의 3.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의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는 기타비용에 합산한다.

8 사업실적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가 + 나]							
가. 매출원가 [①+...+⑥]							
① 상품매입비 [㉗+㉘-㉙]							
㉗ 기초상품재고액							
㉘ 당기상품매입액							
㉙ 기말상품재고액							
② 인 건 비							
③ 임 차 료							
④ 세 금 과 공 과							
⑤ 감 가 상 각 비							
⑥ 기 타							
나. 판매비와 관리비 [⑦+...+⑫]							
⑦ 인 건 비							
⑧ 임 차 료							
⑨ 세 금 과 공 과							
⑩ 감 가 상 각 비							
⑪ 대 손 상 각 비							
⑫ 기 타							
3. 영업이익 [1-2]							

1. 매출액

- 지난 1년간(2000. 1. 1~2000. 12. 31) 상품을 판매하고 획득한 매출총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 상품판매액
지난 1년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얻어진 매출액으로 다음의 경우는 상품판매로 본다.

- ㉠ 상품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을 때
- ㉡ 외상이나 할부판매 또는 상품권 발행의 경우(발행시점이 아닌) 상품이 인도된 시점을 판매로 본다.
- ㉢ 백화점의 특정매입매장은 수수료가 아닌 상품판매의 총외형액을 기입해야 하며 임대매장의 매출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수수료 수익액
백화점, 할인점 등 종합소매업의 임대매장 수수료 수익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기타 수익액
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익액은 모두 포함하여 조사한다.
- ◆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익만 별도 기입(매출액<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매출원가와 판매와 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가. 매출원가

상품구입 등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기입한다.

※ 결산사업체의 경우 원가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입(원가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은 결산사업체도 있음)

① 상품매입비

기초상품재고액 + 당기상품구입액 - 기말상품재고액

㉠ 기초상품재고액('99년말에 이월된 상품)

2000. 1. 1 기준으로 사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잔액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
- 영업창고, 자가창고, 하치장, 야적장 등에 보관중인 상품
- 기준일 현재 수송중인 미착 상품
- 위탁판매를 의뢰한 위탁상품 중 재고품 또는 대금 미결제 상품

㉞ 당기상품매입액

- 지난 1년간(2000. 1. 1~2000. 12. 31) 사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㉟ 기말 상품재고액(2000년 말에 남은 재고상품)

2000. 12. 31 기준으로 사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잔액을 기입한다.

② 인건비

상품매입후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 재가공, 수리 등에 투입된 **사업체 종사자의 인건비**를 기입하며 원가명세서의 급여(임원급여, 급여,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등이 해당된다.

【예】 백화점이 배추 등 상품매입 후 비닐포장 등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체의 수리 등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③ 임차료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2000년도에 지급한 임차료 총액을 말하며 원가 명세서의 임차료가 이에 해당된다.

④ 세금과 공과

2000년도에 납부한 각종 세금(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공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의 합계를 말하며 원가 명세서의 세금과 공과금이 이에 해당된다.(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제외)

⑤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의 원인에 의해 감모된 경제가치로 감가상각충당금전입액을 말하며 원가 명세서의 감가상각비가 이에 해당된다.

⑥ 기타

매출원가에서 ①상품매입비 ~ ⑤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나. 판매비와 관리비

상품의 판매활동 또는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소요된 비용

⑦ 인 건 비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고용주가 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된다.

⑧ 임 차 료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2000년도에 지급한 임차료 총액을 말한다.

⑨ 세 금 과 공 과

2000년도에 납부한 각종 세금(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공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의 합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제외한다.

⑩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의 원인에 의해 감모된 경제가치로 감가상각충당금전입액을 기입한다.

⑪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⑫ 기타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경상연구개발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잡비 등

3. 영업이익

$$[\text{영업이익}] = [1. \text{매출액}] - [2. \text{영업비용}]$$

[9] 납부부가가치세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금	액						백만

- 2000년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

- [납부부가가치세] =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Ⅹ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수입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1. 전세·보증금(원)	① 전 세 금					백만
	② 보 증 금					백만
2. 임 대 료 수 입						백만

1. 전세·보증금

사업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말한다.

2. 임대료 수입

- 토지·건물·장비 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수익(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 항목의 임대료)

Ⅲ 사업체건물연면적

(단위 : 평)

	① 소유	② 임 차	③ 무 상	합 계
사업체건물연면적				
① 매장연면적				

- 기준 사업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건물면적을 소유, 임차, 무상별로 구분하여 **연면적**(밀면적이 아님)을 **평(3.3m²)**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사업체 건물연면적이란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이 아닌 경우(야적장 등)는 제외.
 - 계단(에스컬레이터 포함), 승강기, 연결통로(구름다리, 지하도, 현관출입통로 등)
 - 동일건물내의 문화행사시설 및 체육시설
 - 시장관리사무소, 연구실, 회의실, 종업원 이용시설
 - 소비자 편의시설(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옥내주차장 등)
 - 상품반입장, 기계실 등을 포함한다.
-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물류창고는 그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지점이나 영업소의 사업체연면적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 순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의 사업장이라 하여도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며,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포함한다.
 - 주거비용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 ① 매장연면적이란 사업(상품판매나 용역제공 등)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매장의 연면적을 말한다.

12 판매관리기기 보유대수

(단위 : 대)

①금전등록기	②카드조회기	③컴퓨터	④POSE터미널	⑤기타()	합 계

- 2000. 12. 31 기준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관리기기
 - 카드조회기는 상품구입 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기
 - 컴퓨터는 매장내에 설치하여 영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컴퓨터
 -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온라인 전산터미널의 기능과 금전등록기 기능의 복합기능을 갖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를 Store Processor에 전송하고, 처리된 결과를 수신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말하며,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 체제)에 접속하여 운영되므로 System수가 아닌 터미널(단말기)의 보유대수를 기입하도록 유의한다.
- ※ POS시스템이란-거래물품과 반품여부, 운영, 마케팅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B. 도·소매업 통계조사표(Ⅱ)

(숙박·음식점업)

난 외 사항

사업체번호	행정 구	산업분류부호	표본번호		담당자ID
			도소매 서비스	부가 조사	

○ 도·소매업 통계조사표(Ⅰ)과 동일함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_____	응답자
2. 대표전화번호 : (____) _____ - _____	소속 : _____
3. 소재지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가·동·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빌딩·상가·시장 _____ 동 _____ 층 _____ 호	성명 : _____
4. 인터넷 주소(URL) : http:// _____	

○ 도·소매업 통계조사표(Ⅰ)과 동일함

② 사업내용(점업사업체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큰 순으로기입)

1. 주요사업 내용	%	2. 취급 상품명
①		
②		

○ 지난 1년간 사업체의 실적 중에서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내용과 가장 많이 취급한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입한다.

【예】 관광호텔운영 → 숙박

한식음식점 운영 → 설렁탕, 갈비탕, 정식

휴양콘도운영 → 회원용콘도미니엄

기관구내식당 운영 → ○○학교 구내식당

○ 매출액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사자수나 시설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입하고 사업내용별 백분율(%)을 기입한다.

③ 조직형태(해당번호에 √표시 할 것)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의 법인 ④ 비법인단체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④ 영업기간

1. 연간영업기간 : _____개월

2. 일일영업시간 : (1) 개점시각 ; _____시 _____분 (2) 폐점시각 ; _____시 _____분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⑤ 사업체 정기휴무일수(해당번호에√표시)

① 월1일 ② 월2일(2주1일 포함) ③ 월3일 ④ 주1일 ⑤ 주2일 이상 ⑥ 휴무일 없음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⑥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종사자수(명)			2.연간급여액(원)					
	남	여	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⑤]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	*	*	*	*	*
② 상 용									
③ 임 시									
④ 일 용									
⑤ 무 급				*	*	*	*	*	*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⑦ 사업 실적 (종사자 4인이하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①+②+③]							
① 인 건 비							
② 임 차 료							
③ 기 타							
3. 영업이익 [1-2]							

1. 매출액

- 지난 1년간(2000. 1. 1~2000. 12. 31) 상품(음식 등)을 판매 또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획득한 매출총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 ◆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익만 별도 기입(매출액<u>그</u>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성질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성질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① 인건비

영업활동에 투여되는 모든 종사자의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고용주가 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된다.

【예】 요리(조리)사의 인건비, 음식배달원의 인건비, 숙박시설 안내인의 인건비, 관리직 직원의 인건비 등

② 임차료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2000년도에 지급한 임차료 총액을 말한다.

③ 기타

영업비용 중 ① 및 ② 이외의 모든 비용

【예】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3. 영업이익

$$[\text{영업이익}] = [1. \text{매출액}] - [2. \text{영업비용}]$$

8] 사업 실적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객실 수입료(호텔업만 해당)							
2. 영업비용 [가 + 나]							
가. 매출원가 [①+...+⑥]							
① 음식재료 매입비							
② 인 건 비							
③ 임 차 료							
④ 세 금 과 공 과							
⑤ 감 가 상 각 비							
⑥ 기 타							
나. 판매비와 관리비 [⑦+...+⑫]							
⑦ 인 건 비							
⑧ 임 차 료							
⑨ 세 금 과 공 과							
⑩ 감 가 상 각 비							
⑪ 대 손 상 각 비							
⑫ 기 타							
3. 영업이익 [1-2]							

1. 매출액

지난 1년간(2000. 1. 1~2000. 12. 31) 상품(음식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시설 등을 제공하고 획득한 매출총액에서 매출에누리과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익만 별도 기입(매출액그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객실 수입료

매출액 중 객실수입료를 기입하며 호텔업만 조사한다.(손익계산서 참조)

2. 매출원가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① 음식재료 매입비

- 음식점업(소분류 552) 및 호텔업(세세분류55111)에 해당되는 사업체만 조사한다.
- 음식점 및 호텔식당 등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구입한 재료의 비용을 기입한다.

② 인건비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고용주가 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된다.

【예】 음식점업의 요리(조리)사의 인건비 등

③임차료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2000년 도에 지급한 임차료 총액을 말하며 원가 명세서의 임차료가 이에 해당된다.

④세금과 공과

2000년도에 납부한 각종 세금(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공과(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의 합계를 말하며 원가 명세서의 세금과 공과금이 이에 해당된다.(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제외)

⑤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의 원인에 의해 감모된 경제가치로 감가상각충당금전입액을 말하며 원가 명세서 상 감가상각비가 이에 해당된다.

⑥기타

- 매출원가에서 ①음식재료매입비 ~ ⑤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 숙박업은 비누, 칫솔, 화장지 등 소모품 매입비를 매출원가로 본다.
- 음식점업은 음식료품 재료매입비와 부대비용 등을 매출원가로 보며, 순수 음식료품 재료매입비는 구분 기입한다.(55111. 52만)

나. 판매비와 관리비

음식(숙박시설)의 판매(제공) 또는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소요된 비용

⑦ 인 건 비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

1. 전세·보증금

사업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말한다.

2. 임대료 수입

토지·건물·장비 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수익(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 항목의 임대료)

III 사업체건물 연면적

(단위 : 평)

	① 소유			② 임 차			③ 무 상			합 계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1. 연 면 적															
2. 편의시설 연면적(55111.호텔업만 해당)															
	(1) 직 영						(2) 임 대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합 계 [①+...+⑧]															
① 식당,레스토랑,그릴 등															
② 다방, 커피숍 등															
③ 주점,바,나이트클럽 등															
④ 사우나탕, 증기탕 등															
⑤ 수영장,볼링장,헬스 등															
⑥ 성인오락실 등															
⑦ 이·미용실 등															
⑧ 기 타															

1. 연면적

- 사업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건물면적을 소유, 임차, 무상별로 구분하여 연면적(밀면적이 아님)을 평(3.3㎡)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사업체 건물연면적이란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이 아닌 경우(야적장 등)는 제외
 - 계단(에스컬레이터 포함), 승강기, 연결통로(구름다리, 지하도, 현관출입통로 등)

- 동일건물내의 문화행사시설, 및 체육시설
- 시장관리사무소, 연구실, 회의실, 종업원 이용시설
- 소비자 편의시설(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옥내주차장 등)
- 상품반입장, 기계실 등을 포함한다.

○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물류창고는 그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지점이나 영업소의 사업체연면적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 순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의 사업장이라 하여도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며,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포함한다.

- 주거비용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편의시설 연면적(호텔업만 해당)

○ 호텔의 객실 외의 부대시설을 조사하는 항목으로써 직영시설과 임대시설도 함께 기입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다른 업종에서는 임대한 부분은 다른 사업체로 보아 조사하지 않았으나 호텔업에서는 임대한 시설도 함께 조사한다.

※ 호텔의 부대시설에서 임대부분은 편의시설로 포함하여 조사하나 매출액 항목에서는 임대부분을 제외함에 유의한다.

12 객실(석)수

(단위:실,석)

	만	천	백	십	일
1. 객실수(551.숙박업만 해당)					
2. 객석수(호텔업, 음식점업만 해당)					

1. 객실수 (숙박업만 해당)

숙박업체의 객실수를 조사하며 주인 또는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객실은 제외한다.

2. 객석수(호텔업 및 음식점업만 해당)

○ 호텔의 식당 및 음식점에서 접객용으로 설치한 좌석수를 말하며 방안에 좌석은 없고 식탁만 있는 경우 몇 인용인지 확인하여 좌석수로 기입한다.

☞ 접객용으로 옥외에 설치한 식탁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 음식점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호텔업을 제외한 기타 숙박업체에서는 객석수를 조사하지 않는다.

※ 호텔업은 객실수와 객석수를 모두 기재하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객석수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13 이용자수(55111. 호텔업만 해당)

(단위 : 명)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연 인원							

지난 1년간(2000. 1. 1~2000. 12. 31) 호텔업(55111)의 객실에 투숙한 투숙객의 연인원을 기입한다.

C. 서비스업 통계조사표

(통신·금융·보험·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교육/보건사회복지/오락문화운동관광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난 의 사 항

사업체번호	행정 구역	산업분류부호	표본번호		담당자ID
			도소매 서비스	부가 조사	

○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_____	응답자
2. 대표전화번호 : () - _____	소속 :
3. 소재지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가·동·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빌딩·상가·시장 _____ 동 _____ 층 _____ 호	성명 :
4. 인터넷 주소(URL) : http:// _____	

○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2] 사업내용(겸업사업체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큰 순으로기입)

1. 주요사업 내용		2. 취급 상품명
	%	
①		
②		

○ 지난 1년간 사업체의 실적 중에서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내용과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입한다.

【예】 건물임대 → 주택, 아파트

건물임대 → 사무실, 점포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 → 시스템통합 설계 자문(SI)

소프트웨어 제작 → 게임 소프트웨어

청소업 → 상하수도관

○ 매출액으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사자수나 시설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입하고 사업내용별 백분율(%)을 기입한다.

3] 조직형태(해당번호에 √표시 할 것)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의 법인 ④ 비법인단체

○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4] 영업기간

1. 연간영업기간 : ____개월
 2. 일일영업시간 : (1) 개점시각 ; __시 __분 (2) 폐점시각 ; __시 __분

○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5] 사업체 정기휴무일수(해당번호에 √표시)

① 월1일 ② 월2일(2주일 포함) ③ 월3일 ④ 주1일 ⑤ 주2일 이상 ⑥ 휴무일 없음

○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6]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종사자수(명)			2. 연간급여액(원)					
	남	여	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⑤]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	*	*	*	*	*
② 상 용									
③ 임 시									
④ 일 용									
⑤ 무 급				*	*	*	*	*	*

○ 도·소매업 통계조사표(I)과 동일함

7] 직능별 종사자수(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만 해당) (단위:명)

	① 연구원	② 시스템 엔지니어	③ 컴퓨터 엔지니어	④ 프로그래머	⑤ 오퍼레이터	⑥ 관리영업직	⑦ 기타	합 계
인원수								

① 연구원

H/W, S/W 등 컴퓨터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원

② 시스템엔지니어

시스템설계를 담당하는 정보처리의 고급기술자로 H/W의 구성 및 구조, S/W의 구축방법 등 시스템을 분석·검토해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원을 분배하고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등 시스템운용 전반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자

③ 컴퓨터 엔지니어

컴퓨터 및 관련장비의 유지와 수리를 담당하는 기술자

④ 프로그래머

컴퓨터로 처리할 작업내용을 프로그램 언어의 규칙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⑤ 오퍼레이터

컴퓨터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사람으로 주로 주전산실에 근무한다.

⑥ 관리·영업직

사업체에서 총무·기획·인사·경리·예산 및 수주·계약·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를 말한다.(대표이사, 임원 등 포함)

⑦ 기타 : ① ~ ⑥ 에 해당하지 않는 종사자를 말한다.

⑧ 사업 실적 (종사자 4인이하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①+②+③]							
① 인 건 비							
② 임 차 료							
③ 기 타							
3. 영 업 이 익 [1-2]							

1. 매출액

○ 지난 1년간(2000'. 1. 1~2000. 12. 31) 용역 등을 제공하고 획득한 매출총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기

입한다.(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 **전기통신업(642), 금융 및 보험업(K), 교육서비스업(O), 연구 및 개발업(73)은 종사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를 「[8] 사업실적(종사자 4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란에 조사한다.**

【전기통신업】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과 보조금, 지원금 등의 이전수입을 기입한다.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은행, 상호금융, 투자회사, 신탁회사 등)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 영업수익 : 이자수익과 수입수수료수익, 기타영업수익 등
- 영업외 수익 : 유가증권 평가 충당금 환입액, 잡이익, 유입자산처분이익 등

☞ (주의) 예수금수신고를 연간매출액에 포함하면 안됨

보험업(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보증보험, 등)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 영업수입액 : 보험영업수익, 투자영업수익 등
- 영업외수익 : 외환차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교육서비스업】

공교육기관의 각급 학교는 세출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예산 집행액을 기입한다.

학원, 직업훈련소 등은 수강료수입과 보조금, 지원금 등의 이전수입을 기입한다.

【연구 및 개발업】

연구·개발로 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입과 보조금, 지원금 등의 이전수입을 기입한다.

◆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익만 별도 기입(매출액그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성질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성질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한다.

【금융 및 보험업】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을 합산한다.

① 인건비

영업활동에 투입되는 모든 종사자의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고용주가 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된다.

② 임차료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2000년도에 지급한 임차료 총액을 말한다.

③ 기타

영업비용 중 ① 및 ② 이외의 모든 비용

【예】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시설유지비 재료비 등

3. 영업이익

[영업이익] = [1.매출액] - [2.영업비용]

9] 사업 실적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가 + 나]							
가. 매출원가 [①+...+⑤]							
① 인 건 비							
② 임 차 료							
③ 세 금 과 공 과							
④ 감 가 상 각 비							
⑤ 기 타							
나 판매비와 관리비 [⑥+...+⑪]							
⑥ 인 건 비							
⑦ 임 차 료							
⑧ 세 금 과 공 과							
⑨ 감 가 상 각 비							
⑩ 대 손 상 각 비							
⑪ 기 타							
3. 영업이익 [1-2]							

※ 전기통신업(642), 금융 및 보험업(K), 교육서비스업(O), 연구 및 개발업(73)은 종사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를 「9] 사업실적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란은 사선(\)을 긋는다.

1. 매출액

지난 1년간(2000. 1. 1~2000. 12. 31) 상품(음식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시설 등을 제공하고 획득한 매출총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매출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료,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감정업의 수수료 등과 같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익액을 매출액으로 기입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익만 별도 기입(매출액그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가. 매출원가

재료비, 개발비, 외주비, 연구·기술직종의 종사자 인건비 등 매출액 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① 인건비

급여(임원급여, 급여,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고용주가 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된다.

【예】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관련 운영업 : 연구직, 기술직, 프로그래머, 자료처리원의 인건비 등

청소·경비대행업 : 청소 및 경비인력 지급인건비 등

② 임차료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2000년도에 지급한 임차료 총액을 말하며 원가 명세서의 임차료가 이에 해당된다.

③ 세금과 공과

2000년도에 납부한 각종 세금(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공과

(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의 합계를 말하며 원가 명세서의 세금과 공과금이 이에 해당된다.(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제외)

④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의 원인에 의해 감모된 경제가치로 감가상각충당금전입액을 말하며 원가 명세서의 감가상각비가 이에 해당된다.

⑤ 기타

매출원가에서 ① 인건비 ~ ④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예】 부동산업 : 토지개발비, 건물유지보수비 등

광고업 : 광고물제작관련비용 등

정보처리업 : S/W개발비, 기타 재료매입비 등

나. 판매비와 관리비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소요된 비용

⑥ 인 건 비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고용주가 무급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된다.

【예】 영업·관리직의 인건비 등

⑧ 임 차 료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장비 등에 대하여 2000년도에 지급한 임차료 총액을 말한다.

⑨ 세 금 과 공 과

2000년도에 납부한 각종 세금(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공과(조합비, 협회비, 적십자회비 등)의 합계를 말하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는 제외한다.

⑩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의 원인에 의해 감모된 경제가치로 감가상각충당금전입액을 기입한다.

⑪ 대손상각비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처리된 비용

⑫ 기타

접대비, 광고선전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잡비 등 ⑥ 인건비~⑩ 대손상각비 이외의 모든 비용

3. 영업이익

[영업이익] = [1.매출액] - [2.영업비용]

9) 납 부 부 가 가 치 세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금	액						백만
---	---	--	--	--	--	--	----

- 2000년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

- [납부부가가치세] = [매출부가가치세]-[매입부가가치세]

10)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수입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 (단위 : 원)

1. 전세·보증금(원)	① 전세금						백만
	② 보증금						백만
2. 임대료수입							백만

1. 전세·보증금

사업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말한다.

2. 임대료 수입

- 토지·건물·장비 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수익(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 항목의 임대료)

- 임대업은 조사 제외

12 사업체건물연면적

(단위 : 평)

	① 소 유	② 임 차	③ 무 상	합 계
연 면 적				

- 기준 사업을 목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건물면적을 소유, 임차, 무상별로 구분하여 연면적(밀면적이 아님)을 평(3.3m²)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사업체 건물연면적이란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이 아닌 경우(야적장 등)는 제외
 - 계단(에스컬레이터 포함), 승강기, 연결통로(구름다리, 지하도, 현관출입통로 등)
 - 동일건물내의 문화행사시설 및 체육시설
 - 시장관리사무소, 연구실, 회의실, 종업원 이용시설
 - 소비자 편의시설(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옥내주차장 등)
 - 상품반입장, 기계실 등을 포함한다.
- 별도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물류창고는 그 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지점이나 영업소의 사업체연면적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 순수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기 소유의 사업장이라 하여도 타인에게 임대한 면적은 제외하며,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포함한다.
 - 주거비용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3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1. 인터넷에 접속 PC 대수							대
2. 정보통신기술(ICT) 운용인력							명
3. 정보통신기술(ICT) 투자금액 (지난 1년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4.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장애요인 (비중이 큰 두 가지만 √표시) ① ICT비용과다 ②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자주 바뀜 ③ ICT관련 서비스미흡 ④ 직원들의 ICT관련 기술부족 ⑤ ICT기술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⑥ 직원들의 ICT사용을 꺼림 ⑦ 기타()							
5. 전산장비 보유대수							(단위 : 대)
① 대형서버	② 중형서버	③ 워크스테이션	④ PC서버	⑤ PC	⑥ 기타	합계	

1. 인터넷 접속 PC 대수

- 전세계의 통신망간에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원격접속, 전자우편, 파일전송, 월드와이드웹 등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단지 사내 네트워크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금융기관의 단말기 등)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학교, 학원의 실습 및 강의용 PC도 정보통신기술(ICT)활용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2. 정보통신기술(ICT)운용인력

- 정보통신기술이란 유·무선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부품, 데이터베이스, 시청각물 등에 관련된 분야로서 장비뿐만 아니라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다.
- ICT 운용인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유지 활용하기 위한 순수인력(컴퓨터설계 및 분석가, 컴퓨터프로그래머, 전자 및 통신기술자 등)을 말하며 조사표 입력, 운반·정리를 하기 위한 인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정보통신기술(ICT)투자금액(지난1년간)

- 정보통신기술운용인력 없이 정보통신장비(컴퓨터 등)만 구입한 경우에도 투자금액으로 조사한다.

4. 전산장비 보유 대수

- ① 메인프레임, 대형UNIX Server(슈퍼컴퓨터, 병렬처리시스템)등N/W(network)상에서 하위레벨 500 Nodes 이상을 연결·가동할 수 있는 H/W
- ② 중형UNIX Server로 N/W상에서 하위레벨 500Nodes 미만을 연결·가동할 수 있는 H/W
- ③ 주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며 컴퓨터그래픽, CAD 등의 기능이 있음
- ④ 인텔프로세서를 정착한 하드웨어와 윈도NT 넷웨어 등의 운영체제로 네트워크 관리 등과 같은 서비스주체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PC서버프로세서로는 인텔의 펜티엄프로세서, 디지털의 알파프로세서 등이 있음.
- ⑤ 인텔8088~80586급의 PC, 노트북 등
- ⑥ 프린터, 스캐너, 플로터 등 부대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단말기 등

14 직종 및 학력별 종사자수

(단위 : 명)

학 력 직 종	학 력					
	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이하
계						
① 연구직						
② 기술직						
③ 기 타						

- 종사자란 일용, 임시,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상시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6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의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 ② 상용 = 14 직종 및 학력별 종사자수의 합계 이어야한다.

<직종별>

- ① 연구직

연구소의 연구원, 일반부서의 연구원으로 제품의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말한다.

- 연구원 : 학위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자.(또는 기사 1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등) 연구개발활동 부서에서 행정,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과거에 연구원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도 포함.
- 연구보조원 : 연구원이 아닌 자중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측정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보조하는 자.
- ② 기술직 : 연구직과 생산직 중간에서 자격 및 학력에 관계없이 제품개선보완,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③ 기타 : 연구직과 기술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 종사자 (예: 의사, 은행원, 교사, 학원강사, 자동차 수리업종사자, 이·미용실종사자 등)

<학력별>

고졸이하에는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및 대학 중퇴자를 포함하며 학위수료나 학교 중퇴는 이전 학위, 졸업으로 조사.

- 【예】 ① 전문학사 ⇒ 4년 미만대학 졸업
 ② 대학 수료나 중퇴는 고졸로 조사
 ③ 대학원 수료나 중퇴는 학사로 조사

15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단위 : 원)

구 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 자체기술							
② 위탁기술							
③ 기술도입비							

1.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란 사업체가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 등을 위해 동 연구개발 활동에 2000년 1년간 투자한 총비용(인건비, 원재료비, 기술도입비, 기계장치, 토지 등의 구입비)을 말하며 즉 제품생산,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개발이나 기술적 개선을 시도하는 활동에 투입된 금액으로 자체기술연구개발비와 위탁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로 구분한다

- 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비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 자체연구개발비중 기계장치 및 토지·건물취득비는 대차대조표상의 1년간의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한 토지 및 설비 취득액을 기입하고, 재료비 및 기타경비와 인건비 및 위탁기술연구개발비는 「제조원가명세서」 및 「판매비와 관리비(손익계산서)」의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등을 기재한다.

① 자체기술연구개발비

○ 인건비

- 연구활동과 그 보조활동의 종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 재료비 및 기타경비

- 연구활동 수행에 사용한 원료, 시료 등 비내구성 소모자재 비용, 건물임차료, 컴퓨터 서비스료, 여비 및 우편통신비 기타 연구실 운영비 등.

○ 기계장치 및 토지·건물취득비

- 연구기기, 기계장치 등의 시설구입 및 설치비와 연구소 건설비 등 연구작업용 고정자산의 연간 신규투자액을 기입한다.

② 위탁기술연구개발비

- 외부연구기관(대학교, 연구소 등)에 용역을 주거나 공동개발로 인해 소요되는 제비용을 기입한다.

③ 기술도입비

- 서비스업활동과 관련하여 1년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입한다.

※ 기술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경우

- 연구소, 연구부서에서 실시하는 활동
 - 연구에 직접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 실험, 검사, 분석, 기계·장비의 구입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 연구소, 연구이외에서 실시하는 활동
 - 생산현장인 공장 등에서의 시작품(試作品) 설계·제작 및 이에 따른 시험활동
-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활동
 - 연구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서무, 회계 등의 지원활동.
- 기 타
 - 사내에서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연구개발을 의뢰한 경우

☞ 기술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연구소와 공장등의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생산의 원 활화를 기하기 위한 생산공정의 일상적 점검, 품질관리에 관한 활동 및 제품·반제품·생산물 및 토양·대기 등의 검사, 시험, 측정, 분석업무등
- 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무소속 및 연구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연수훈련
- 일반적인 지형도의 작성, 지하자원을 찾기 위한 탐사활동 및 지질 조사, 해양조사, 천체관측 등의 일반적인 자료수집 등

16 유형고정자산

(단위 : 원)

구분	연초잔액					연간증가액					연간감소액					연간감가상각비					연말잔액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합계																									
① 토지																									
② 건물																									
③ 구축물																									
④ 기계장치 등																									
⑤ 차량·운구 등																									
⑥ 기타																									
⑦ 건설중인 자산																									

※ 산업중분류 87.영화, 방송 및 공연사업과 88.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에서 문화산업(표본번호 32, 33)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자산유형별 연말잔액과 연초잔액합계, 연간증가액합계, 연간감소액합계, 연간감가상각비합계, 연말잔액합계를 조사하고, 그 이외의 사업체는 자산유형별 연말잔액만 조사한다.

☞ 사선(\)이 표시된 항목은 기입하지 않음

구분	연초잔액					연간증가액					연간감소액					연간감가상각비					연말잔액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조	천	백	십	억
합계	중분류 87. 및 88. 중 문화산업통계 대상사업체만 기입																								
① 토지																									
② 건물																									
③ 구축물																									
④ 기계장치 등																									
⑤ 차량·운구 등																									
⑥ 기타																									
⑦ 건설중인 자산																									

모든사업체 조사

1. 유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으로 사업체의 생산활동과 관련있는 자산만을 기입해야 하며 동일

기업내 타사업체의 유형자산은 포함하지않고 연초잔액에 연간증가액을 더하고 연간감소액과 연간 감가상각액을 뺀 연말잔액을 기입

2. 유(무)형고정자산에서 자산이 없는 경우는 0, 백만원 미만인 경우 1 (일백만원)로 처리

① 토지 : 사업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② 건물 :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 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③ 구축물 : 도로,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나 공작물

④ 기계장치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

⑤ 차량 운반구 : 차량, 선박, 항공기 등

⑥ 기타 : 1년이상 내구성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책상, 의자, 컴퓨터 등) 등

⑦ 건설중인 자산 : 업무용 유형자산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완공에 이르기까지 일시 처리하는 계정

※ 유형고정자산 구분 예시

【예】 1.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사업체가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땅은?

☞ A사업체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 회사가 취득한 땅은 고정유형자산의 토지에 해당

2.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B사업체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땅은?

☞ B사업체는 영업활동 사용목적이 아닌 판매용이므로 재고자산의 상품에 해당

3. 정보처리업을 하는 C사업체가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취득한 땅은?

☞ C사업체는 영업활동 사용목적이 아닌 투자용이므로 투자자산으로 투자부동산에 해당

17 무형자산

(단위 : 건, 원)

구 분	건 수	연 말 잔 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소프트웨어								
④기타()								

1. 무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기적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 즉, 특정기업이 소유함으로써 독점적, 배타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특정권리나 효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적, 경제적 권리를 말함.

- ① 산업재산권이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 ② 저작권이란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저작권자도 포함됨
- ③ 소프트웨어란 모든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자체개발과 외주개발, 소프트웨어 중간재 구입, 외부 구입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가 50만원 이상일 때 조사한다.**
- ④ 기타는 영업권, 차지권, 창업비 등 기타무형자산 명을 구체적으로 기입(기타무형자산이 여러 가지일 경우 별지 사용)

※ 연구개발비와 무형자산 개발비의 구분

- 1. 연구개발비에서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경우 개발비로 무형자산으로 계상
 - 자체기술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구입비는 소프트웨어에 기입하고 그 외 개발비는 기타무형자산에 기입

2.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할 개발비(아래조건에 모두 충족될 경우에 한함)

- 신제품 또는 신기술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개발(소프트웨어 개발 포함)활동과 관련되어야 한다.
-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한다.
-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게 기대되어야 한다.

3. 연구비와 개발비 계산방법

【예】 A회사는 과학자 2명이 창업한 회사로서 연구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있다. 다음은 이 회사의 2000년도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지출내역이다.

- 신기술에 대한 연구비용 : 700,000원
- 신제품에 대한 연구비용 : 1,200,000원
- 신기술에 대한 개발비용 : 870,000원
- 신제품에 대한 개발비용 : 1,000,000원

위 지출액 중에서 50%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으며, 개발비는 당해 연도부터 10년간 상각하면,

☞ 지출시 : 연구비 1,900,000원

경상개발비 935,000원,

$(870,000\text{원} + 1,000,000\text{원}) \times 50\% = 935,000\text{원}$

* 개발비 935,000원

☞ 결산시 : 무형자산상각비(개발비) 93,500원

$(935,000\text{원} \div 10\text{년} = 93,500)$

☞ 처리방법 :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한 연구비와 경상개발비(2,835,000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개발비(935,000원)는 무형자산으로 내용연수를 나눈 당기 상각액(93,500원)을 산출하여 조사표 작성시 연초잔액에 연간증가액을 더하고 연간감소액과 당기 상각액을 뺀 연말잔액을 기입

Ⅶ. 조사표 검토 및 제출

1. 조사표 검토요령

가. 일반사항

- (1) 조사누락 및 중복사업체가 없는지 검토한다.
- (2) 조사대상 사업체의 업종에 따라 조사표의 종류 및 항목별 기입 내용과 각 세세 항목의 합계가 정확한지 검토한다.
- (3) 조사표 일련번호 등이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검토한다.
- (4) 항목별 연관관계가 타당한지 검토한다.
- (5) 기입누락 여부를 검토하고 누락시에는 반드시 질의·확인하여 보완하되 착오사항을 정정할 경우 반드시 수정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복선(=)을 긋고 정정하며, 명부와 관련되는 내용이면 명부도 동시에 정정한다.

나. 조사표 항목별 검토 사항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소재지란에 법정동명과 번지, 빌딩·시장·상가의 경우 동·호수 등이 자세하게 기입되었는지 검토한다.

(2) 사업내용

사업체의 주요사업내용과 취급품목,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었는지와 산업분류부호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3) 조직형태

조직형태 ①~④중 반드시 한 곳에 V표 하여야 하므로, 누락되었거나 V표가 2개 이상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항목과의 연관 사항을 검토한다.

· 『①개인사업체』 이면 종사자수의 『①자영업주 및 가족종사자』란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4) 영업기간

일일영업시간의 개·폐점시각 기록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예】 (폐점시각-개점시각)÷음수 또는 0

(5) 사업체정기휴무일수

사업체의 정기적인 휴무일만을 고려하여 기입했는지 검토한다.

(6)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 종사자수 합계는 반드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 서비스업통계조사표의 72.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 업종의 경우 직능별종사자수와 종사자수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업체명, 조직형태, 사업내용 등을 참조하여 일정 급여없이 수수료만을 받고 종사하는 외판원(우유, 야쿠르트, 화장품 등)이나 무급종사자의 누락 여부와 체육시설 운영업의 회원과 같이 대상 이외의 사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 상용종사자, 임시, 일용종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간급여액이 기입되어야 한다.

(7) 사업실적

(가) 연간 매출액

-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적자 이거나 영업(경상)이익률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경우 경비가 누락 또는 중복되었는지 확인한다.

1) 매출 총이익(매출 총손실)

$$[\text{매출 총이익}] = [\text{연간매출액}] - [\text{매출원가}]$$

2) 영업이익(영업손실)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총이익}] - [\text{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이익이 적자 또는 과다 계상된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중복 기입하지 않았는가?
 - 기타비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을 누락시키지 않았는가?
 - 영업비용 또는 영업수익이 본사(지사)분을 포함하여 조사하지 않았는가?

- 도·소매업의 상품매입비는 ㉠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이 되므로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한다.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중복기입 여부를 반드시 검토한다.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각 항목별로 경비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조사된 경우 경비누락이나 중복여부를 확인한다.
- 무급종사자에게 고용주가 지급한 수당이나 수수료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각 항목의 누락됨 없이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한다.
- 종사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체의 경우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가 기타비용에 합산되었는지 확인한다.

(8) 전세·보증금

사업체건물연면적의 항목과 비용항목의 임차료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9) 사업체건물연면적

- 단위는 반드시 평(坪)으로 하고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업체건물연면적 중 임차가 있을 경우 지급임차료란과 전세보증금란에 그 내역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매장연면적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고 직접 판매하는 장소의 면적으로 상품 보관창고나 하치장 등은 제외한다.

(G.도·소매업만 해당)

(10) 편의시설연면적(55111.호텔업만 해당)

객실의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1) 판매관리기기보유대수(G.도·소매업만 해당)

판매관리기기는 결제수단을 동반하는 장비로 단순히 조회만 하는 기기는 제외한다.

- (12) 객실(석)수(55.숙박 및 음식점업만 해당)
규모가 비슷한 다른 사업체의 수의·비용항목과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 (13) 이용자수(55111.호텔업만 해당)
객실수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한다.
- (14) 전산장비보유대수(서비스업통계조사표만 해당)
종사자수와 비교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여부를 확인한다.
- (15) 유형고정자산(서비스업통계조사표만 해당)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자산으로 건설중인 것도 포함한다.
- 산업중분류 87.영화, 방송 및 공연사업과 88.기타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중에서 문화산업(표본번호 32, 33)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자산유형별 연말잔액과 연초잔액합계, 연간증가액합계, 연간감소액합계, 연간감가상각비합계, 연말잔액합계 항목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한다.
- (11) 기타 : 항목간 불일치, 중복, 기입누락 등을 재확인한다.
조사표(3종) 중 해당되는 조사표를 사용하였는지 확인한다

2. 조사표 정리 및 제출

가. 조사표 편철

- 사무(출장)소별로 조사가 완료된 후 사무소는 산업중분류별, 출장소는 산업대분류별로 편철하되 사업체번호순서로 권당 최대 100매 단위로 편철한다.

나. 조사표 표지 작성

사무소명	사무(출장)소		
대상업종명			
조사표 권수	권중	권	매

① 사무(출장)소명

조사표를 작성한 사무(출장)소명을 기입한다.(측면에도 기입)

② 대상 업종명(측면에도 기입)

각 권별로 편철한 조사표의 중(대)분류별 대상업종명을 기입한다.

예) 52. 소매업(사무소), G. 도매 및 소매업(출장소)

③ 조사표 권수

각 권마다 $\times \times$ 권중 \times 권으로 기입한다.(측면에도 기입)

예) ○ ○ 사무(출장)소 권수 합계 25권

산업분류순으로 25권 중 1권, 25권 중 2권 …… 25권 중 25권

④ 조사표 매수

각 권별로 조사표 매수를 기입한다.

다. 조사표 제출

- 조사표는 각 사무소, 출장소별로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한다.
- 제출할 조사표류
 - 조사표(단독·본사 별)
 - 집계표

부 록

1. 용어해설
2. 조사표와 결산서 연관관계
3. 세금과 공과
4. 조사사례
5. 조사표

<부록 1>

용 어 해 설

▣ 정보산업

- 근거 : OECD 과학기술산업위원회(STI Committee)
 - "정보통신기술산업"
 - 제조업 : 정보를 처리, 전달, 시현하는 기능을 갖거나; 물리적 현상을 검출, 측정 및 기록하거나 물리적 공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자처리를 이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서비스업 :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를 처리, 전달 및 시현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정보컨텐츠산업"이라 함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정보컨텐츠의 배급 또는 복제를 주된 활동의 일부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정보컨텐츠"라 함은 본질적 가치가 정보, 교육, 오락 등의 내용(저작권으로 보호)에 있으며, 다양한 형태(인쇄물, 전자매체, 온라인, 방송 등)로 입수가능하고, 일반대중을 위하여 제작된다.
 - 컨텐츠는 전자매체(시디,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칩, 온라인 등)로 배급될 수 있는 제품으로 한정된다.
 - 따라서 컨텐츠산업에 선정된 업종이 전자형태로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문화산업

- 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와 관련된 산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 출판사 및 인쇄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 종합유선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디자인(산업디자인을 제외한다),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영상소프트웨어 중 양방향성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정보통신 관련 기술지원은 제외한다)
- 기타 전통의상·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재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극,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 지식기반산업

- OECD의 지식기반산업 정의 및 포괄 범위는 90년 중반까지도 첨단 기술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협의의 지식기반산업
 - 정의 :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활동, 또는 새로운 기술의 창출 및 투입집약도가 높은 산업
 - (1) R&D 활동이 활발하거나,
 - (2) 정보통신기술 (ICT)의 사용 또는 정보통신기술이 체화된 제품의 투입비중이 높거나,
 - (3) 고속련 인력의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
 - 범위 : 첨단기술제조업과 정보통신서비스, 금융·보험업과 비즈니스서비스업
- 광의의 지식기반산업
 - 정의 : 기술과 인적자본의 투입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
 - 분류기준 : 지식창출, 활용, 인적자원 지식집약도
 - 범위 : 협의의 범위에 중고위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부동산, 의료, 공공교육, 사회 및 개인서비스 포함.
 - 제조업은 기술집약도 (총산출중 R&D투자비율)에 따라 첨단기술,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저기술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첨단기술과 중고위기술제조업이 포함됨.
 - 서비스업은 ICT 집약도 및 인적자원지식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기준이나, 측정이 어렵고, 통계자료 부족 및 국제비교성을 감안하여, 협의의 범위에 의료복지, 교육 부동산·임대업, 오락 및 문화·운동관련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을 포함

<부록 2>

손익계산서와 조사표항목 연계(1)

과 목	금 액	도·소매업통계조사(I) 항목	비 고
I. 매출액	××	㉔항의 1. 매출액 매출액 = 상품매출액-매출에누리	
1. 상품매출액	××		
2. 매출에누리	××		
II. 매출원가	××	㉔항의 2. 가. 매출원가	
1. 기초상품재고액	××		
2. 당기상품매입액	××	상품매입비 = 기초재고+당기매입-기	
3. 기말상품재고액	××	말재고 - 타 계정 대체	
4. 타계정대체	××		
III. 매출총이익	××		
IV. 판매비와 관리비	××	㉔항의 2. 나. 판매비와 관리비	
1. 급 여	××	㉔항의 2. 나. 판매비와 관리비	
2. 제 수 당	××	㉔ 인건비 :	
3. 퇴 직 급 여	××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4. 퇴직급여충당금	××	복리후생비 등 모든 인건	
5. 복 리 후 생 비	××	비성 비용을 포함한다	
6. 임 차 료	××	㉔항 2. 나. ㉔ 임차료	
7. 세 금 과 공 과	××	㉔항 2. 나. ㉔ 세금과 공과	
8. 감 가 상 각 비	××	㉔항 2. 나. ㉔ 감가상각비	
9. 대 손 상 각 비	××	㉔항 2. 나. ㉔ 대손상각비	
10. 수 도 광 열 비	××		
11. 보 험 료	××		
12. 광 고 선 전 비	××		
13. 수 수 료	××	㉔항 2. 나. ㉔ 기타	
14. 접 대 비	××		
15. 운 반 · 하 역 비	××		
16.	××		
V. 영업이익	××	㉔항 3. 영업이익	
VI. 영업외수익	××		
1. 이 자 수 익	××		
2. 임 대 료	××	㉔항 2. 임대료 수입	
이	하	생	략

손익계산서와 조사표항목 연계(2)

과 목	금 액	도소매업통계조사(Ⅱ) 항목	비 고
I. 매출액	××	⑧항의 1. 매출액	
1. 객실료수입	××	⑧항의 1. ● 객실수입료	
2. 식료수입	××		
3. 음료수입	××		
4. 봉사료수입	××		
5. 상품매출액	××		
6. 기타수입	××		
Ⅱ. 재료비	××	⑧항의 2. 가. 매출원가	
1. 식료	××	⑧항의 2. 가. ① 음식재료 매입비	
2. 음료	××		
3. 상품매출원가	××		
4. 기타	××		
Ⅲ. 인건비	××		
1. 급여 및 수당	××	⑧항의 2. 가. ② 인건비와 2. 나. ⑦ 인건비로 구분조사	
2. 상여금	××		
3. 퇴직급여	××		
4. 단체퇴직급여	××		
5. 복지후생비	××		
6. 잡급	××		
Ⅳ. 경비	××		
1. 식당용기비	××	⑧항의 2. 가. ⑥기타와 나. ⑫기타로 구분 조사	
2. 린넨 및 제복비	××		
3. 메뉴비	××		
4. 객용소모품비	××		
5. 주방소모품비	××		
6. 일반소모품비	××		
7. 세탁비	××		
8. 장화장식비	××		
9. 통신비	××		
10. 차량유지비	××		
11. 도서신문비	××		
12. 세금과공과	××	⑧항의“2.가.④”와 “나.⑨”로 구분조사	
13. 임차료	××	⑧항의“2.가.③”과 “나.⑧”로 구분조사	
14. 감가상각비	××	⑧항의“2.가.⑤”와 “나.⑩”으로 구분조사	
15. 대손상각비	××	⑧항의 2.나. ⑪ 대손상각비	
16. 조사연구비	××	⑧항의 2. 가. ⑥기타와 나. ⑫기타로 구분 조사	
17. ……………	××		
V. 영업이익	××	⑧항 3. 영업이익	
Ⅵ. 영업외수익	××		
1. 이 자 수 익	××		
2. 임 대 료	××	⑩항 2. 임대료 수입	
이	하	생	략

손익계산서와 조사표항목 연계(3)

과 목	금 액	서비스업통계조사 항목	비 고
I. 매출액	××	㉑항의 1. 매출액	
1. 상품 매출액	××		
2. 용역매출액	××		
II. 매출원가	××	㉑항의 2. 가. 매출원가	
(1) 상품매출원가	××		
1. 기초상품재고액	××		
2. 당기상품매입액	××		
3. 기말상품재고액	××		
(2) 용역매출원가	××		
III. 매출총이익	××		
IV. 판매비와 관리비	××	㉑항의 2. 나. 판매비와 관리비	
1. 급 여	××		
2. 제 수 당	××	㉑항의 2. 나. ㉑ 인건비:	
3. 퇴 직 급 여	××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4.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복리후생비 등 모든 인건 비성 비용을 포함한다	
5. 복 리 후 생 비	××		
6. 임 차 료	××	㉑항 2. 나. ㉒ 임차료	
7. 세 금 과 공 과	××	㉑항 2. 나. ㉓ 세금과 공과	
8. 감 가 상 각 비	××	㉑항 2. 나. ㉔ 감가상각비	
9. 대 손 상 각 비	××	㉑항 2. 나. ㉕ 대손상각비	
10. 수 도 광 열 비	××		
11. 보 험 료	××		
12. 광 고 신 전 비	××		
13. 수 수 료	××		
14. 집 대 비	××	㉑항 2. 나. ㉖ 기타	
15. 운 반 · 하 역 비	××		
16.	××		
V. 영업이익	××	㉑항 3. 영업이익	
VI. 영업외수익	××		
1. 이 자 수 익	××		
2. 임 대 료	××	㉑항 2. 임대료 수입	
이	하	생	략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과 목	포함되는 계정 과목	비 고
I. 매출액	주된 수익 및 기타 겸업수익	
II. 매출원가	[매출(제조)원가명세서 참조]	
III. 매출총이익	[I - II = III]	
IV. 판매비와 관리비	급료·임금·상여금·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세금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접대비 및 기밀비, 광고선전비, 경상개발연구비, 보험료, 운반·하역·보관·포장비, 대손상각비, 기타	*간접비항목임
V. 영업이익	[III - IV = V]	
VI.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및 할인료, 유가증권이자, 배당금, 환차익, 잡수익 등	*리스회계에서는 금융수익(비용)을 영업수익(비용)으로 처리함
VII.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및 할인료, 기부금, 환차손, 유가증권처분·평가손실, 매출할인각, 잡손실 등	
VIII. 경상이익	[V + VI - VII = VIII]	
IX. 특별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	
X. 특별손실	재해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XII. 법인세비용		
XIII 당기순이익	[VIII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법인세 = XIII	

과 목	제×(당)기		제×(진)기	
	금	액	금	액
III. 영 (또는) 영업 이익 (또는) 영업 외 손익 (실)				
IV. 영				
1. 유형자산 처분 이익				
2. 임대료 이익				
3. 지분법가치손익				
4. 투자유가증권 처분 이익				
5. 투자유채권 손실				
6. 투자유채권 손익				
7. 외화환산차익				
8. 외화환영차익				
9. 기타 영업외 손익				
10. V. 영				
1. 유형자산 처분 손실				
2. 지분법가치손실				
3. 투자유가증권 손실				
4. 투자유채권 손실				
5. 투자유채권 손익				
6. 외화환산손실				
7. 외화환영손실				
8. 기타 영업외 손익				
9. VI. 경 (또는) 특별 이익 (실)				
1. 자산별 수증이익				
2. 채무면제이익				
3. 보험특이익				
4. 기타 특별이익				
5. VII. 특별 손실 (실)				
1. 재해손실				
2. 기타 특별손실				
3. IX. 신용사업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또는) 신용사업법인세비용차감전 손실 (실)				
X. 비신용사업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또는) 비신용사업법인세비용차감전 손실 (실)				
XI. 법 인 세 비				
제. 당 기 순 이				
(또는) 당 기 손 실				
당기: 신용사업당기순이익 : xxx원				
비신용사업당기순이익 : xxx원				
전기: 신용사업당기순이익 : xxx원				
비신용사업당기순이익 : xxx원				

매출원가 명세서(Statement of Goods Sold)

내역	포함되는 계정 과목	비고
I. 기초상품재고액	○ '00. 1. 1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매입가	
II. 당기상품매입액	○ ['00년상품매입총액 - (매입에누리 + 환출 + 매입할인)]	
III. 당기상품제조원가		
IV. 매입 이외의 상품 증가액		
V. 기말상품재고액	○ '00.12.31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매입가	
VI.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		
VII. 용역원가		
VIII.
IX. 당기매출원가	○ [I + II - V] ○ 결산사업체의 경우 손익계산서상에 기재된 매출원가 부분의 총액 ○ 미결산사업체는 아래사항과 이에 수반된 경비의 합을 말한다. - 숙박업은 비누, 칫솔, 화장지 등 소모품매입비 - 음식점업은 음식료품 재료매입액 - 서비스업은 재료비, 외주비와 매출액 창출에 필수적인 비용 ▶ 부동산업의 토지개발비,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유지보수비 등 ▶ 임대업의 임대장비 감가상각비 등 ▶ 정보처리업의 S/W개발비, 자료처리원 인건비, 기타 재료매입비 등 ▶ 광고업의 광고물제작 관련비용 등 ▶ 청소 및 경비대행업의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등	* 도·소매업 * 결산사업체 * 미결산사업체 * 참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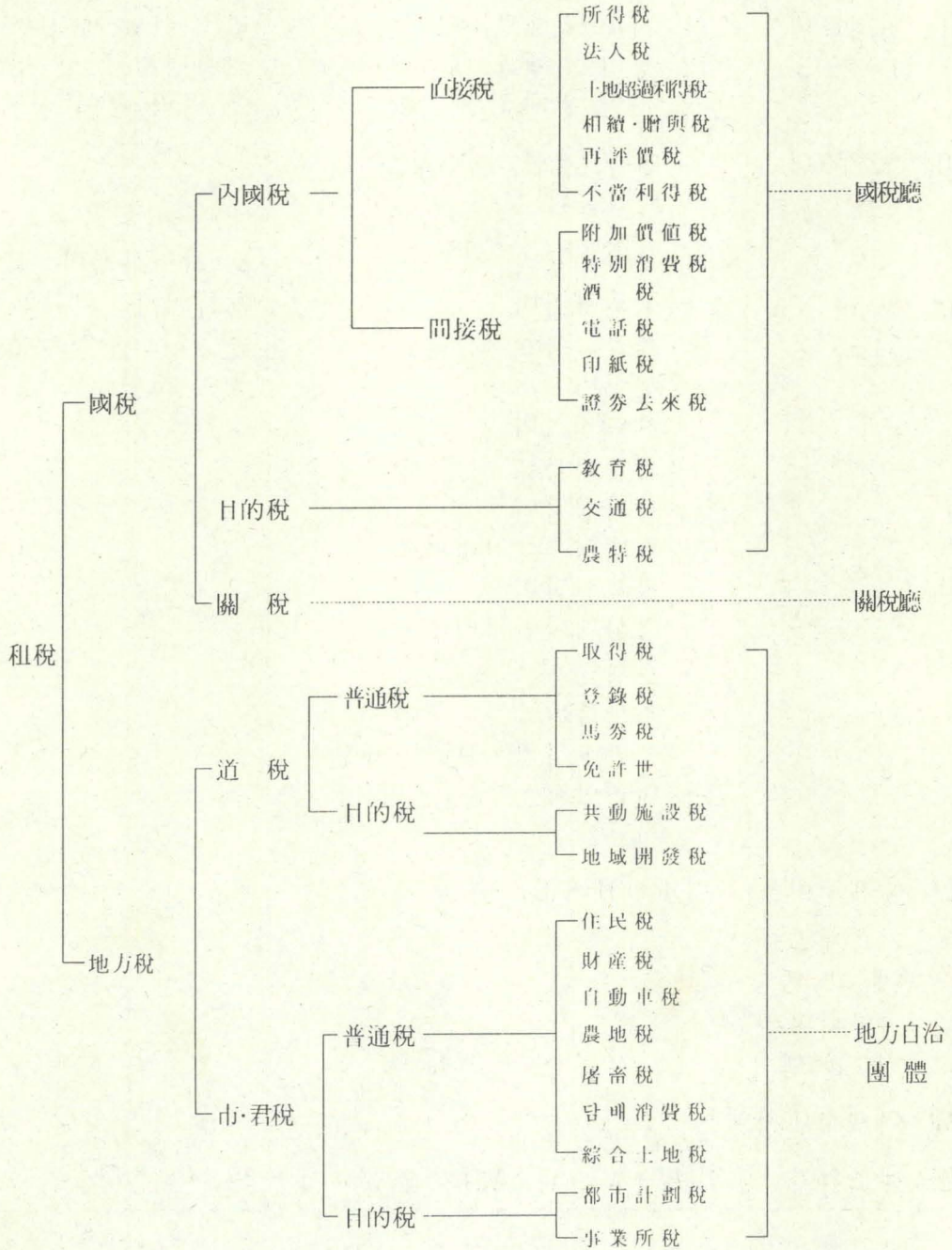
제조원가명세서(Statement of Cost of Goods Manufactured)

내역	포함되는 계정 과목	비고
I. 원재료비 (1+2-3)	1. 기초 원재료 재고액 2. 당기 원재료 매입액 3. 기말 원재료 재고액	리스, 렌탈, 제작, 판매 원가명세서 등 업종 에 따라 용어 상이
II. 노무비	- 임금, 잡급, 제수당, 퇴직급여 등	
III. 경비	- 복리후생비 - 수도광열비 - 세금공과금 - 수선비 - 차량유지비 - 지급임차료 - 감가상각비 - 접대비 및 기밀비 - 광고선전비 - 경상개발연구비 - 보험료 - 소모품비 - 운반·하역·보관·포장비 - 대손상각 - 기타	* 리스회계의 경우 지급이자, 외환차손, 운용리스자산처분손 등이 포함
IV. 총제조비용	[I + II + III]	*
V. 기초재공품 재고액		
VI. 기말재공품 재고액		
VII. 타계정대체액		
VIII. 제조원가	[IV + V - VI - VII]	

<부록3>

세금과 공과

1. 조세 체계



2. 국세 요약

종합소득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자는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국세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소득이 발생 할 때 납부하는 국세로서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법인명의로 납부하는 국세
상속세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납부하는 국세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사항을 증여 받았을 때 납부하는 국세
재평가세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국세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 수입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국세
특별소비세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주세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가 납부하는 국세
전화세	전화가입자가 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국세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문서작성시 인지첨부에 의한 국세
증권거래세	주권(지분포함)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소에서 거래 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
* 상기내용은 세목별로 개괄적인 내용만 요약하였는 바 구체적인 과세사항이 아님	

3. 공과금

국세기본법에서는 공과금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損金算入되는 法定公課金(法令 25①)

- ① 상공회의소비
- ② 조합비(회비 포함)또는 협회(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및 협회만 해당)
- ③ 대한적십자 회비
- ④ 수입허가신청시 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 ⑤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으로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 ⑥ 금융기관(단기금융회사가 및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함)의 신용보증기금출연금
- ⑦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출연금
- ⑧ 신용관리기금출연금
- ⑨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한 직업훈련분담금
- ⑩ 관광개발진흥기금납부금
- ⑪ 축산진흥기금적립금
- ⑫ 잠업진흥기금적립금
- ⑬ 석유사업기금의 납부금
- ⑭ 석탄가공업자의 석탄산업안정기금의 납부금
- ⑮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 ⑯ 농약관리기금납부금
- ⑰ 해외건설진흥기금납부금
- ⑱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기금출연금
- ⑲ 가스안전관리기금의 납부금
- ⑳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출자임원에 대한 부담금도 손금산입함)
- ㉑ 기술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금

- ㉒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㉓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액
- ㉔ 대한석탄공사가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 ㉕ 방사선편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 ㉖ 진폐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 ㉗ 발전소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㉘ 교통유발분담금(1992.12.21. 신설)
- ㉙ 장애인고용부담금(1992.12.21. 신설)
- ㉚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1992.12.21. 신설)
- ㉛ 폐기물처리부담금
- ㉜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
- ㉝ 보험보증기금출연금
- ㉞ 수도사업자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
- ㉟ 담배사업법에 의한 공익사업부담금
- ㊱ 특정다목적댐 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 ㊲ 열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수입부담금('96.12.31 신설)
- ㊳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한 대손보전준비금과 출연금('96.12.31 신설)
- ㊴ 예금보험기금으로 납부하는 보험료('96.12.31 신설)
- ㊵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에 수입금 납부액('96.12.31 신설)
- ㊶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 납부하는 부담금('96.12.31 신설)

나. 指定'寄附金'으로 보는 경우

- ①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의 특별회
- ② 임의조합 또는 협회의 회비

다. 損金不算入하는 경우

- ①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법인 22601-1102, 1992. 5.20)
- ②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③ 증권회사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④ 도로점용료, 도로점용료 상당액 부당이득금(법인 22601-1014, 1992. 5. 6.)
- ⑤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법인 22601-1929, 1929. 9.16)

4. 부가가치세

가. 납세의무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개인 및 법인 모두 해당됨.

나. 신고기간 : 1기(1.1~6.30), 2기(7.1~12.31) 둘로 나누어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신고토록 되어 있음.

다. 과세의 종류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4천8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가. 광업

나. 제조업(예외 있음)

다. 도매업(도소매업 겸업 포함)

라. 부동산매매업

- 과세특례자 :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단, 대리, 주선, 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천2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이 배제되는 사업

가. 광업

나. 제조업(예외 있음)

다. 도매업(도소매업 겸업 포함)

라. 부동산 매매업 마. 부동산임대업,

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사.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세 적용제외 업종(부가세법 제12조)

○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않은식료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용역 포함)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수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다만, 광고는 제외)
8.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9. 담배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12. 토지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4.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부록 4>

조 사 사 례

문1

사업체명부상 산업분류와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 ☞ 사업체가 명부상 전수조사업종이나 전수층일 경우 조사제외하고 표본층일 경우는 대체

문2

전수층을 구분하는 절사점은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 ☞ 조사기준년의 전년(2000년기준조사일 경우 '99년) 종사자수(절사점표 참조)

문3

조사기준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체가 포착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 사업체에 해당하는 산업분류를 확인한 후
 - ① 전수조사 대상 업종 ⇒ 조사
 - ② 전수층에 해당 ⇒ 조사
 - ③ 표본층에 해당 ⇒ 조사제외

문4

임대업 중 조작자가 딸린 운수 및 기계장비 임대와 운수 및 기계장비만 임대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는?

- ☞ ① 조작자가 딸린 경우(운수업 : 중분류 60~63) ⇒ 조사제외
- ② 조작자가 딸리지 않은 경우(임대업 : 중분류 71) ⇒ 조사

문5

유고 및 신규사업체의 경우 사업체번호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 일련번호작성요령
 - ① 유고사업체 ⇒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 확인부호를 기입 후 표본층 업체는 대체, 전수업종 및 전수층 업체는 조사제외
 - ② 신규사업체 ⇒ 별도로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 사업체명부의 마지막사업체에 이어서 사업체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기입하면 사업체번호는 자동 생성됨.

문6

음식점의 경우 성수기에 옥외나 기타 다른 장소에 좌석을 늘려 영업을 할 경우 객석수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 영업기간 중 상시 설치된 좌석수를 조사

문7

골프장이나 낚시터는 사업체건물연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 건물에 한하여 면적을 조사하므로 건물이 아닌 골프장이나 낚시터는 조사에서 제외(단, 실내골프연습장은 조사대상)

문8

본사인 회사법인에서 사무소를 개설해주고 종사자가 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조직형태, 종사자,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 조직형태는 회사법인, 본·지사 구분은 지사, 종사자는 무급종사자, 수당이나 수수료는 인건비로 조사

문9

정수기 외판원이 회사에 등록만 하고 드물게 정수기를 파는 경우 종사자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 ☞ 무급종사자로 조사

문10

음식점업과 소형가게를 겸업하는 경우 산업분류는?

- ☞ 주된 사업내용(매출액이 많은)으로 분류

문11

교육청산하 각종 교육원의 조사여부 및 산업분류는?

- ☞ 교육원은 산업분류 80912(직원훈련기관)임

문12

여관이나 모텔의 객실수가 30실 이상이면 호텔로 조사하여야 하나?

- ☞ 호텔업은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법의 의거 등록된 호텔이 대상이므로 여관업(55112)으로 조사

문13

조사기준년도에 통·폐합된 경우 조사방법은?

- ☞ 가. 통·폐합된 사업체가 표본총일 경우 ⇒ 대체
- 나. 통·폐합된 사업체가 전수조사 대상 업종 혹은 전수총일 경우
 - ① 통·폐합된 이후 업종이 기존 산업분류와 같은 경우 ⇒ 통·폐합 이전까지 조사하여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입(영업기간은 12개월)
 - ② 통·폐합된 이후 업종이 기존 산업분류와 다른 경우 ⇒ 통·폐합 이전까지 조사(영업기간은 통·폐합 이전까지 영업기간)

문14

시립도서관의 산업분류는?

- ☞ 88211(도서관 및 기록보존소)로 분류

문15 해양수족전시관 등 전시관, 박물관의 산업분류는?

☞ 가. 해양수족관

- ① 살아있는 각종 어패류의 관람장소(63빌딩내 해양수족관)인 경우
⇒ 88231(식물원 및 동물원)
- ② 살아있는 판매를 목적으로 각종 어패류를 관람시키는 경우
⇒ 52692(관상어 소매)

나. 전시관

- ① 판매하지 않고 순수 관람형태로 운영할 경우(주로 유료)
⇒ 88221(박물관 운영업)
- ② 판매를 목적으로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관람시키는 경우
⇒ 5266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③ 판매를 목적으로 장식성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을 관람시키는 경우
⇒ 52662(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다. 박물관 ⇒ 88221(박물관 운영업)

문16 합동법률사무소 및 합동세무사무소 소장의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자영업주로 구분

문17 주유소의 매장면적 범위는 어떤 시설까지 포함하는가?

☞ 주유기가 설치된 장소 중 지붕의 밑면적

문18 호텔의 장기투숙자의 이용자수 산출은 어떻게 하는가?

☞ 객실 이용 연인원수이며 숙박 1일당 이용인원수를 조사

※ 2박3일 동안 2명이 이용할 경우 2박*2명=4명

※ 1명씩 2실을 2일을 이용할 경우 1명*2실*2일=4명

문19 무선전화(무선호출기 포함)의 기기 판매업 및 통신서비스업을 겸할 경우 산업분류는 어느 업종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 ☞ ① 기기 판매업은 52514(통신기기소매업)
- ② 통신서비스업은 무선통신업(6422)
- ③ 겸업의 경우 매출액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하여 조사

문20 주거용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산업분류 및 조직형태의 구분은?

☞ 가. 산업분류 ⇒ 70211(주거용 부동산관리업)

나. 조직형태는 비법인단체

문21

한 개의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겸업할 경우 사업내용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가?

- ☞ ① 대분류 G, H, J(641.우편 및 소포송달업 제외), K, L, M, O, P, Q, R에 해당하는 업종만 조사
- ② 매출액 순으로 2종류만 기입(구성비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문22

사업체의 응답자가 통계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요구할 경우 제시 할 법조문은?

☞ 가. 통계법

제10조(자료제출명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실시조사) ①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정 통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보호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방해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행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문23

물품창고와 사무실만 있는 도매업체의 경우 매장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 매장면적을 0으로 기입

문24

주산업은 도매업이고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한 사업체가 사무실과 물품창고, 소매업을 위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장면적은?

☞ 소매업의 매장면적을 기입

문25

영업성수기에 영업을 하고 비수기에는 휴업을 하는 사업체의 영업기간은?

☞ 휴업기간은 제외하고 실제로 영업을 한 기간을 기입

문26

횃집의 경우 한식과 일식을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 정통일본식 횃집을 제외하고 한식으로 구분

문27

객실수입보다 욕탕 및 음식점수입이 많은 호텔업의 경우 산업 분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음식점 및 욕탕시설은 호텔업의 편의시설에 속하므로 55111(호텔업)으로 구분

※ 관광진흥법 제3조(2000.12.31 현재) ⇒ 관광객의 숙박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부수되는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문28

4인이하 사업체의 사업비용 기입 방법은?

☞ 1. 도소매업통계조사표(Ⅰ) ⇒ ①매출원가, ②판매 및 관리비 중 인건비, ③판매 및 관리비 중 임차료, ④판매 및 관리비 중 기타
2. 도소매업통계조사표(Ⅱ), 서비스업통계조사표 ⇒ ①인건비 ②임차료 ③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원가성 및 판매 및 관리비성을 구분하지 않고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임차료만 구분하여 해당란에 기입하고 나머지는 기타란에 기입.

문29

무상으로 수집한 재활용품의 사업비용의 구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 ① 매출원가 ⇒ 무상으로 수집한 경우라도 수집에 따른 부수비용(운송비 등)을 기입
- ② 판매 및 관리비 ⇒ 직원인건비, 임차료 등 관련항목 기입

문30 LPG소매업에서 사업체 명부상에는 한 개의 사업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개인별 사업등록을 한 여러 사람이 각기 따로 영업을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사업체선정이 잘못되었으므로 대체

문31 제조업체의 물류창고, 저장소 등이 도매업체로 분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예) 한국상업가스(주) 및 대우자동차(주)의 천안물류센터 등

- ☞ ① 상주직원이 없을 경우 ⇒ 전수총일 경우 조사 제외, 표본총일 경우 대체
- ② 상근직원이 있고 별도회계가 존재하면 사업체이므로 조사
- ③ 자사상품외에 타사상품도 보관하며 보관료를 받는 경우 ⇒ 창고업에 해당하므로 전수총일 경우 조사하지 않고 표본총일 경우 대체
- ④ 물류센터 ⇒ 창고업에 해당하므로 전수총일 경우 조사하지 않고 표본총일 경우 대체

문32 음식업이 주된 사업이고 주유소업이 부산업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산업분류는?

☞ 주된 사업인 음식업(55229)으로 분류

문33 지붕이 있는 공업사의 작업장 및 동물원의 사육장면적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 ① 공업사의 작업장 ⇒ 사업체건물연면적과 매장면적에 포함하여 조사
- ② 동물원의 사육장면적 ⇒ 서비스업이므로 사업체 연면적에 포함하여 조사

문34 음식료품 중개업의 매출액에 포함되는 범위는?

☞ 중개수수료만 기입(중개상품의 가격은 조사하지 않음)

문35 대학교, 시·도 등에서 위탁판매를 할 때 진열상품 중 대부분이 재고상품으로 남아 있고 판매하지는 않는데 이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판매용이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분리가 불가능할 때는

포함하여 재고처리

문36

대체용명부에 대체할 수 있는 동일 산업소분류의 사업체가 없어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산업중분류에서 대체가 가능한지?

☞ 중분류에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서비스업과에 직접 문의한 후 처리.

문37

수명의 농민이 상추를 직접 생산하여 “상추직판장”에 위탁판매를 할 경우 “상추직판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상추직판장”의 상시종사자수는 2명)

- ☞ ① 산업분류 ⇒ 위탁판매이므로 51102(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② 매출액 ⇒ 수수료 총액
③ 매출원가 ⇒ 직판장으로 위탁물건을 수송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수송비 등)

문38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매출원가는?

☞ 사업체에서 구입한 부품 구입비, 정비공의 인건비(공임). 단, 소비자가 자기비용으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문39

예식장으로 분류되어있는 사업체가 음식점업을 겸업하고 예식장 사용료는 무료일 경우 산업분류는?

☞ 주된 사업이 예식장이므로 예식장으로 분류

문40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 대부분 24시간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실제근무시간을 기입

문41

골프장으로 분류된 사업체의 수입구성비가 골프장수입 80%, 골프용품소매 및 음식점 수입 20%일 경우 조사방법은?

- ☞ ① 산업분류 ⇒ 88331(골프장 운영업)
② 소매용 골프용품 구입비, 음식재료매입비 등은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조사

문42

주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체에 컴퓨터 등을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중분류는?

☞ 51(도매업)로 분류

문43

교육박물관의 산업분류는?

☞ 교육관련 자료를 관람하게 한 경우이므로 88221(박물관 운영업)로 분류

문44 농촌진흥청 제주감귤연구소의 산업분류는?

☞ 73102(농학연구 개발업)로 분류.

문45 남제주 수산종묘배양장의 산업분류는?

☞ 73102(농학연구 개발업)로 분류.

문46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건물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 사무실 및 관리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경비소 및 창고 등 포함)면적

문47 5일장에서 영업하는 소매업의 경우 조사대상 및 영업기간, 매장면적, 사업체휴무일수는 어떻게 조사하는가?

- ☞ ① 조사대상 ⇒ 일정한 고정 설치물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이며 다수의 시장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
- ② 영업기간 ⇒ 실제 영업활동을 한 기간
- ③ 매장면적 ⇒ 영업을 위한 고정 설치물 면적
- ④ 사업체 정기휴무일수 ⇒ 휴무일 없음

문48 신발 도매업체에서 매장이 별도로 없고 사무실에서 컴퓨터4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판매관리기 보유대수는 어떻게 되는가?

☞ 컴퓨터는 매장면적내에 설치되어 판매관리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하므로 컴퓨터 4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문49 시립도서관의 경우 조직형태 및 본·지사 구분, 사업체건물 소유형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 ① 조직형태 ⇒ 회사이외의 법인
- ② 본·지사 구분 ⇒ 단독사업체
- ③ 사업체건물 소유형태 ⇒ 무상

문50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체가 자동차소유주와 수요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매출액은?

☞ 수수료 총액

문51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 부가가치세율은 10/100 임(부가가치세법 제 14조) 이나 면제 및 세율이 다른 업종도 있으므로 지침서 부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참조.

문52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되는가?

☞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3 ④)

- ①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 43/100
- ② 제조업 ⇒ 22/100
- ③ 전기·가스 및 수도업 ⇒ 21/100
- ④ 소매업 ⇒ 20/100
- ⑤ 건설업 ⇒ 37/100
- ⑥ 음식업 ⇒ 50/100
- ⑦ 숙박업 ⇒ 50/100
- ⑧ 운수·창고 및 통신업 ⇒ 50/100
- ⑨ 부동산임대업 ⇒ 43/100
- ⑩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 41/100
- ⑪ 기타 서비스업 ⇒ 41/100

문53

호텔의 객실 이용자 중 숙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 숙박하지 않은 객실 이용자수는 조사에서 제외

문54

공문수학, 눈높이영어, 튼튼영어 등 방문하여 학습지를 판매하고 일정시간 교육을 시키는 경우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80933(방문 및 통신 교육학원)

문55

PC 게임방, 인터넷 게임방의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① 88912(컴퓨터 게임방 운영업)로 조사

② 게임방 산업분류 구분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사용할 경우 ⇒ 88911(전자 게임장운영업)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사용할 경우 ⇒ 88912(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문56

계절적 휴무가 발생하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연간영업기간은?

☞ 실제로 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비수기인 하절기를 포함하여 조사

문57

일일영업시간 중 폐점시각이 개점 다음날일 경우 폐점시각은?

☞ 폐점시각에 24시를 더하여 기입.

예) 오후 2시 30분에 영업을 시작하여 익일 오전 4시에 끝나는 경우

⇒ 개점시각 : 14:30 폐점시각 : 28:00

문58 사업체 종사자수 조사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종사자수는 영업기간 월평균 근무인원수로 조사

문59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체”일 경우 반드시 존재하는 종사자 지위형태는?

☞ 자영업주

문60 조직형태가 회사법인, 회사이외의 법인, 비법인단체일 경우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 종사자 지위형태는?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문61 기본급 없이 수당만 받는 신문지국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종사자 지위형태는?

☞ 무급종사자

문62 자동차 공업사의 나대지의 작업장은 사업체 건물연면적에 포함되는가?

☞ 포함하지 않음

문63 시설현황에서 전세금이 조사되었는데 영업비용의 임차료가 조사된 경우는 잘못 조사된 것인가?

☞ 기계 혹은 장비 등의 임차가 있을 때 임차료 지출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는 반드시 잘못 조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문64 사업체건물연면적에서는 임차면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사되어야 할 비용항목은?

☞ 전세금 또는 임차료

문65 판매기기 보유대수(도소매업) 중 “컴퓨터”의 조사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 매장내에서 판매 및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문66 무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 및 매출원가는?

☞ ① 산업분류 ⇒ 51731(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② 매출원가 ⇒ 수집에 따른 운송비 등

문67 벼룩시장,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의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22123(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으로 조사에서 제외

문68

보일러도매업체가 보일러설비를 겸할 경우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도매와 설비 중 주산업부문(부가가치 혹은 매출액비중이 높은 부문)
⇒ 보일러설비부문이 많을 경우 건설업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

문69

경로당은 어떤 형태의 사업체인가?

☞ 경영주(운영주체)가 존재하고 정부의 지원 또는 개인, 사회단체의 지원(후원)금으로 운영

문70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의 사업체가 산업분류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의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하였을 경우 산업분류는?

☞ 88395(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

문71

무급종사자의 실적급(수당 등)의 기재항목은?

☞ ① 결산사업체는 결산서에 반영(인건비 혹은 원가)되었음
② 결산서를 작성하지않는 사업체는 인건비(혹은 원가)에 포함

문72

중고자동차 위탁판매 사업체의 매출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 위탁판매수수료

문73

건강식품, 화장품, 우유 등의 상품을 판매원이 방문하여 판매하는 경우 산업분류 및 매장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 ① 산업분류 ⇒ 52893(방문판매업)
② 매장면적 ⇒ 0(528. 무점포소매업)

문74

건축물 일반청소업(75922)과 인력공급업(75121)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 ① 인력공급업 :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을 공급하되 자기관리하에 인력을 확보하여 수요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수요자에게 대가를 받아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주는 형태
② 건축물 일반 청소업 : 자기관리하에 건물의 청소를 전문으로 하고 청소의 대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

문75

사업체건물이 회사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이며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차료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업체건물면적은 무상으로 구분하고 건물임차료는 0임

문76

유고 발생으로 인한 표본사업체의 대체방법은?

- ☞ ① 대체명부에서 유고사업체와 동일한 그룹을 찾아 종사자수와 매출액이 비슷한 사업체를 선정하여 대체
- ② 해당그룹에서 대체할 사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위 그룹에서 선정하고 위 그룹에서도 대체할 사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아래 그룹에서 선정하여 대체

문77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의 종사자수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 노인정을 직접 관리하는 인원을 종사자로 조사

※ 회원은 종사자가 아님에 유의

문78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수산물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의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 51102(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문79

폐차장의 경우 폐차를 구입하여 압축, 해체 등 제반작업들이 이루어지는 데 사업비용 조사시 노무자들의 인건비가 원가로 분류되어 있을 때 비용부문의 인건비는 어떻게 조사되어야 하는가?

- ☞ 매출원가의 인건비로 조사.

문80

고물수집상의 산재되어 있는 고물적재장의 면적은 어떻게 조사하여야 하는가?

- ☞ 사업장 면적은 건물면적만이 조사대상이므로 건물면적은 합산하여 조사하고 건물이 아닌 면적은 조사에서 제외

문81

시립도서관의 경우 조직형태는?

- ☞ 시립도서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이외의 법인에 해당됨

문82

“경남사회정책연구소”의 경우 연구원인 대학교수,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 1명 및 출근을 하지 않은 연구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경우 종사자는 어떻게 조사하여야 되는가?

- ☞ 대학교수, 아르바이트 학생은 종사자로 조사하여야 하며 출근을 하지 않은 연구회원들은 종사자수에서 제외

문83

조명기구 소매가 주산업이지만 가정에 조명기구를 팔기 위해 소규모 조명기구 설치공사도 겸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설치

공사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 매출액에 포함하여 조사

문84

병원 세탁물을 수거하여 전문적인 세탁을 하는 사업체로 세탁 공장 시설이 되어있고 제조원가도 작성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업분류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가?

☞ 93913(세탁물 공급업)

문85

분재판매가 묘목밭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 묘목밭을 매장면적으로 볼 수 있는가?

☞ 별도의 매장시설이 없다면 매장면적으로 볼 수 없음

문86

해수욕장 주위에서 민박운영을 목적으로 지어진 민박집을 조사할 경우 성수기만 연간 영업기간으로 조사하여도 되는지?

☞ 성수기 이외에도 영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 영업기간을 조사

문87

판매관리기기 보유대수조사에서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기기는?

☞ 상품의 판매 및 관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기

문88

사업체내에 주거부분이 있으며 일괄하여 임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료 조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조사

문89

빵 및 과자류 소매업(52215)과 제과점업(55241)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接客시설이 있으면 제과점업이며接客시설이 없고 소매만 하는 경우는 빵 및 과자류 소매업임.

문90

결산사업체로서 팩시밀리를 통해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조사대상사업체는 반드시 1회 이상 방문하여야 함

② 면접타계식 조사를 원칙으로 하나 방문이후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팩시밀리, e-mail등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문91

임대업의 경우 사업실적항목의 임대료수입은 어떻게 조사하는가?

☞ 임대업은 임대수수료가 매출액이므로 조사표상의 임대료수입은 발생

하지 않음

문92

겸업사업체의 경우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산업분류를 결정하게 되는데 매출액이나 비용 등도 포함되는지?

- ☞ ① 산업분류는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
- ②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산출액(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 조사에서는 매출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
- ③ 상기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2000. 1. 17일 개정)” 13쪽의 기준에 의해 결정

문93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권리금을 포함해야 하는가?

- ☞ 포함하지 않음

문94

장의사업의 산업분류는?

- ☞ ① 운송만 하는 경우 ⇒ 60233(조사제외)
- ② 운송과 장의용품을 취급하는 경우 ⇒ 93921(조사)
- ③ 운송, 장의용품 취급 및 장례식장 운영 ⇒ 93921(조사)

문95

관상수 및 분재를 도매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 ☞ ① 51204(화초 및 산식물도매업)
- ② 51202(묘목도매업)이 아님에 유의

문96

무급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실적급 수당 등은 사업실적 중 어느 항목에 조사되어야 하는가?

- ☞ 인건비

문97

건설자재 판매업의 산업분류는?

- ☞ ① 건설업자에게 판매 ⇒ 515에서 종류별로 구분
- ② 일반소비자(자가사용자)에게 판매 ⇒ 52619(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 소매업)

문98

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산업분류는?

- ☞ ① 55199(그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 ② 교육업이 아님에 유의

문99

대한주택공사의 산업분류는?

70121(주거용 건물 공급업)

문100

뉴스를 취재(주제 포함), 공급하는 사업체의 산업분류는?

- ① 자유기고가, 뉴스통신원, 사진작가, 만화가의 서비스 등 ⇒ 87332
- ② 방송사 소속 ⇒ 872 중에서 분류
- ③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사업체 소속 ⇒ 2212 중에서 분류

문101

A회사는 전용회선을 사용하며 80대가 인터넷 접속가능한데 그 중 10대를 보안등의 관계로 접속을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의 인터넷 접속 PC대수는?

70대로 조사

문102

정보통신기술 운용인력(종사자) 및 부서는?

컴퓨터 설계 및 분석가, 컴퓨터프로그래머, 전자 및 통신기술자 등, 전산실, 통신실, 연구소 등

문103

정보통신기술운용인력(부서) 없이 컴퓨터만 구입한 경우에 정 보통신기술투자 금액에 포함되는가?

정보통신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도 조사대상이므로 컴퓨터를 구입한 금액도 조사

문104

H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중퇴한 사람의 학력은?

고졸로 조사
대학원수료나 중퇴는 학사로 조사

문105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 경우는?

조사 사업체가 투자한 금액만 자체기술로 조사

문106

유(무)형 고정자산에서 자산이 백만원 미만인 경우 처리방법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 백만원 미만은 1(백만원)로 처리

문107

무형자산의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적은 사업체에서는 소모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때 조사방법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가 50만원이상일 때만 조사하고 결산업체인 경우 자산으로 처리된 소프트웨어를 조사

문108

학교, 학원 등의 강의용 컴퓨터도 ICT활용에 포함되는가?

ICT활용에는 학교나 학원의 실습 및 강의용 PC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

<부록 5>



승인번호
제 10126 호

비밀의 보호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기준
도·소매업 통계조사표 (I)
(자동차판매·도매업·소매업)

□ 조사대상기간 : 2000. 1. 1 ~ 12. 31

사업체번호	행정구역	산업분류부호	표본번호		담당자ID
			도소매 서비스	부가조사	

☞ 위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난임.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_____	응답자
2. 대표전화번호 : () -	소속 :
3. 소재지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가·동·리 번지 호 빌딩·상가·시장 동 층 호	성명 :
4. 인터넷 주소(URL) : http://_____	

4.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입

2] 사업내용

1. 주요사업 내용	%	2. 취급 상품명
①		
②		

- 주된 사업내용순으로 기입하되 도매·소매·중개업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입. 예) 가정용가전제품 소매
- 사업내용별 취급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입. 예) TV, 냉장고 등

3] 조직형태(해당번호에 √표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의 법인	④ 비법인단체
---------	--------	------------	---------

-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업체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등

통 계 청

4] 영업기간

1. 연간영업기간 : ____개월
 2. 일일영업시간 : (1) 개점시각 ; __시 __분 (2) 폐점시각 ; __시 __분

1. 2000년도에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간

5] 사업체 정기휴무일수(해당번호에 √ 표시)

① 월1일 ② 월2일(2주1일 포함) ③ 월3일 ④ 주1일 ⑤ 주2일 이상 ⑥ 휴무일 없음

※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정기적인 휴무일수를 말하며 국경일, 창립기념일 등은 제외

6]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종사자수(명)			2. 연간급여액(원)					
	남	여	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⑤]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	*	*	*	*	*
② 상 용									
③ 임 시									
④ 일 용									
⑤ 무 급				*	*	*	*	*	*

1. 2000년도 사업체에 종사한 월평균종사자수

- ① 개인사업체의 경영주와 정상영업시간의 1/3이상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가 없는 무급가족종사자
 - ②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
 - ③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종사자
 - ④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 ⑤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2. 각종 세금공제전의 급여총액

7] 사업 실적 (종사자 4인이하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매출원가							
3. 판매비와 관리비[①+②+③]							
① 인 건 비							
② 임 차 료							
③ 기 타							
4. 영업이익 [1-2-3]							

- 1. 영업활동(상품판매나 용역제공 등)으로 획득한 수익
- 2. 상품구입 등 매출액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 3. 상품 판매활동 또는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소요된 비용
 - ①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의 총액
 - ②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장비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③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① 및 ② 이외의 모든 비용

8] 사업 실적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가 + 나]							
가. 매출원가 [①+...+⑥]							
① 상품매입비 [㉗+㉘-㉙]							
㉗ 기초상품재고액							
㉘ 당기상품매입액							
㉙ 기말상품재고액							
② 인 건 비							
③ 임 차 료							
④ 세 금 과 공 과							
⑤ 감 가 상 각 비							
⑥ 기 타							
나. 판매비와 관리비 [⑦+...+⑫]							
⑦ 인 건 비							
⑧ 임 차 료							
⑨ 세 금 과 공 과							
⑩ 감 가 상 각 비							
⑪ 대 손 상 각 비							
⑫ 기 타							
3. 영업이익 [1-2]							

- 영업활동(상품판매나 용역제공 등)으로 획득한 수익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익만 별도 기입
 -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성질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성질의 비용으로 크게 나눈 후,
 - 상품구입 등 매출액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 나. 상품 판매활동 또는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소요된 비용
 - ⑦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의 총액
 - ⑧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장비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⑨ 2000년도에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의 합계
 - ⑩ 고정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으로 인해 소모된 경제적 가치
 - ⑥ 매출원가 중 ①~⑤ 이외의 모든 비용
 - ⑪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대여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액으로 처리된 비용
 - ⑫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⑦~⑪ 이외의 모든 비용
 -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 ※ 결산서 작성 사업체는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 기재

9] 납부부가가치세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금 액						백만

※ 2000년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으로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Ⅹ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수입 (증사자 5인 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1. 전세·보증금(원)	① 전 세 금							백만
	② 보 증 금							백만
2. 임 대 료 수 입								백만

1.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전세금이나 보증금
2. 토지·건물·장비 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수익(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 항목의 임대료)

Ⅺ 사업체건물연면적 (단위 : 평)

	① 소 유	② 임 차	③ 무 상	합 계
사업체건물연면적				
① 매장연면적				

- ※ 사업체건물의 연면적(3.3m²=1평)
- ① 상품판매나 용역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매장의 연면적

Ⅻ 판매관리기기 보유대수 (단위 : 대)

①금전등록기	②카드조회기	③컴퓨터	④POSE터미널	⑤기타()	합 계

- ※ 상품판매내역을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임차를 포함한 판매관리기기의 보유대수
- ⑤ 기타항목은 오른쪽 괄호안에 기기명을 기입

비고	※휴업 등 사업체의 특이사항 기재
<p>※ 조사표 항목 중 [7]항 또는 [8]항 “사업실적” 작성근거(해당번호에 √표시)</p> <p>① 결산서 ② 결산서이외 장부 ③ 응답자의 기억 ④ 기타()</p>	



승인번호
제 10126 호

비밀의 보호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기준 도·소매업 통계조사표(Ⅱ) (숙박·음식점업)

■ 조사대상기간 : 2000. 1. 1 ~ 12. 31

사업체번호	행정구역	산업분류부호	표본번호		담당자ID
			도소매서비스	부가조사	

※ 위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난입.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_____	응답자
2. 대표전화번호 : () - _____	소속 :
3. 소재지 : _____ 시·도 시·군·구 읍·면·동 _____ 가·동·리 번지 호 빌딩·상가·시장 동 층 호	성명 :
4. 인터넷 주소(URL) : http:// _____	

4.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입

2] 사업내용

1. 주요사업 내용	%	2. 취급 상품명
①		
②		

1. 주된 사업내용순으로 기입(관광·일반호텔, 모텔, 여관, 민박, 한식, 회집, 일식, 양식 등으로 구분)
2. 사업내용별 취급 상품명(갈비탕, 비빔밥, 매운탕, 김밥, 우동 등 구체적으로 기입)

3] 조직형태(해당번호에 √ 표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의 법인	④ 비법인단체
---------	--------	------------	---------

- ①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②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업체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③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④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등

통 계 청

4] 영업기간

1. 연간영업기간 : ____개월
 2. 일일영업시간 : (1) 개점시각 ; ____시 ____분 (2) 폐점시각 ; ____시 ____분

1. 2000년도에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간

5] 사업체 정기휴무일수(해당번호에 √ 표시)

- ① 월1일 ② 월2일(2주일 포함) ③ 월3일 ④ 주1일 ⑤ 주2일 이상 ⑥ 휴무일 없음

※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정기적인 휴무일수를 말하며 국경일, 창립기념일 등은 제외

6]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종사자수(명)			2. 연간급여액(원)					
	남	여	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⑤]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	*	*	*	*	*
② 상 용									
③ 임 시									
④ 일 용									
⑤ 무 급				*	*	*	*	*	*

1. 2000년도 사업체에 종사한 월평균종사자수

- ① 개인사업체의 경영주와 정상영업시간의 1/3이상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가 없는 무급가족종사자
- ②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
- ③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종사자
- ④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 ⑤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나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2. 각종 세급공제전의 급여총액

7] 사업 실적 (종사자 4인이하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①+②+③]							
① 인 건 비							
② 임 차 료							
③ 기 타							
3. 영업이익 [1-2]							

1. 영업활동(음식판매나 숙박시설제공 등)으로 획득한 수익

2.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성질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성질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재

- ①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의 총액
- ②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장비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③ 영업비용 중 ① 및 ② 이외의 모든 비용

8 사업 실적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	백	십	억	천	만	백	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객실 수입료(호텔업만 해당)									
2. 영업비용 [가 + 나]									
가. 매출원가 [①+...+⑥]									
① 음식재료 매입비									
② 인 건 비									
③ 임 차 료									
④ 세 금 과 공 과									
⑤ 감 가 상 각 비									
⑥ 기 타									
나. 판매비와 관리비 [⑦+...+⑫]									
⑦ 인 건 비									
⑧ 임 차 료									
⑨ 세 금 과 공 과									
⑩ 감 가 상 각 비									
⑪ 대 손 상 각 비									
⑫ 기 타									
3. 영업이익 [1-2]									

- 영업활동(음식판매나 숙박시설제공 등)으로 획득한 수익
 -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익만 별도 기입
 - 호텔업의 객실수입료를 기입(산업세세분류 55111만 조사)
 -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성질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성질의 비용으로 크게 나눈 후
 - 가. 재료구입비 등 매출액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 나. 상품(음식 등)의 판매 및 숙박시설제공 활동 또는 사업체의 관리·유지에 소요된 비용
 - ② ⑦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의 총액
 - ③ ⑧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장비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④ ⑨ 2000년도에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의 합계
 - ⑤ ⑩ 고정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으로 인해 소모된 경제적 가치
 - ⑥ 매출원가 중 ①~⑤ 이외의 모든 비용
 - ⑪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대여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액으로 처리된 비용
 - ⑫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⑦~⑪ 이외의 모든 비용
 -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 ※ 결산서 작성 사업체는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 기재

9 납부부가가치세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금	액						백	만

2000년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으로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10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수입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1. 전세·보증금(원)	① 전세금						백만
	② 보증금						백만
2. 임대료수입							백만

1.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전세금이나 보증금
 2. 토지·건물·장비 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수익(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 항목의 임대료)

11 사업체건물 연면적 (단위 : 평)

	① 소유	② 임차	③ 무상	합계						
1. 연면적										
2. 편의시설 연면적(55111. 호텔업만 해당)										
	(1) 직영			(2) 임대						
	만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일
합계 [①+...+⑧]										
① 식당, 레스토랑, 그릴 등										
② 다방, 커피숍 등										
③ 주점, 바, 나이트클럽 등										
④ 사우나탕, 증기탕 등										
⑤ 수영장, 볼링장, 헬스 등										
⑥ 성인오락실 등										
⑦ 이·미용실 등										
⑧ 기타										

1. 사업체건물의 연면적(3.3㎡=1평)
 2. 호텔의 객실을 제외한 각종 부대시설의 연면적(3.3㎡=1평)

12 객실(석)수 (단위:실,석)

	만	천	백	십	일
1. 객실 수(숙박업만 해당)					
2. 좌석 수(호텔업, 음식점업만 해당)					

- ☞ 주인이나 종업원이 사용하는 객실은 제외
 ☞ 집객용으로 설치한 좌석수(식탁만 있는 경우와 실외에 설치된 좌석수도 포함)
 ※ 호텔업은 1항 및 2항 모두 기입

13 이용자수(55111. 호텔업만 해당) (단위 : 명)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연인원							

☞ 호텔업의 객실에 투숙한 투숙객의 연인원.

비고 ※ 휴업 등 사업체의 특이사항 기재

※ 조사표 항목 중 [7]항 또는 [8]항 "사업실적" 작성근거(해당번호에 √표시)
 ① 결산서 ② 결산서이외 장부 ③ 응답자의 기억 ④ 기타()



승인번호
제 10127 호

비밀의 보호

이 조사표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기준 서비스업 통계조사표

(통신/금융·보험/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교육/보건사회복지/오락,문화,운동관련/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 조사대상기간 : 2000. 1. 1 ~ 12. 31

사업체번호	행정구역	산업분류부호	표본번호		담당자ID
			도소매 서비스	부가 조사	

* 위표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난임.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 : _____	응답자
2. 대표전화번호 : () - _____	소속 :
3. 소재지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동 _____ 가·동·리 _____ 번지 _____ 호 _____ 빌딩·상가·시장 _____ 동 _____ 층 _____ 호	성명 :
4. 인터넷 주소(URL) : http:// _____	

4.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입

2] 사업내용

1. 주요사업 내용	2. 취급 상품명
①	
②	

1. 주된 사업내용순으로 기입
2. 사업내용별 세부 용역 또는 재화

3] 조직형태(해당번호에 √ 표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의 법인	④ 비법인단체
---------	--------	------------	---------

- ①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 ②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업체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 ③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④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등

통 계 청

4] 영업기간

1. 연간영업기간 : _____ 개월
 2. 일일영업시간 : (1) 개점시각 ; _____ 시 _____ 분 (2) 폐점시각 ; _____ 시 _____ 분

1. 2000년도에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기간

5] 사업체 정기휴무일수(해당번호에 √ 표시)

① 월1일 ② 월2일(2주일 포함) ③ 월3일 ④ 주1일 ⑤ 주2일 이상 ⑥ 휴무일 없음

※ 사업체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일수를 말하며 국경일, 창립기념일 등은 제외

6]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1. 종사자수(명)			2. 연간급여액(원)					
	남	여	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⑤]									
①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	*	*	*	*	*
② 상 용									
③ 임 시									
④ 일 용									
⑤ 무 급				*	*	*	*	*	*

1. 2000년도 사업체에 종사한 월평균종사자수

- ① 개인사업체의 경영주와 정상영업시간의 1/3이상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가 없는 무급가족종사자
- ②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계속 징기직원으로 일하는 종사자
- ③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종사자
- ④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
- ⑤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

2. 각종 세금공제전의 급여총액

7] 직능별 종사자수(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만 해당) (단위 : 명)

	① 연구원	② 시스템 엔지니어	③ 컴퓨터 엔지니어	④ 프로그래머	⑤ 오퍼레이터	⑥ 관리영업직	⑦ 기타	합 계
인원수								

- ① H/W, S/W관련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 ② 시스템설계·분석 담당 기술자(컨설턴트 포함)
- ③ 컴퓨터 및 관련장비를 유지보수하는 기술자
- ④ 작업내용을 프로그래밍하고 유지·관리하는 종사자
- ⑤ 컴퓨터 기계장치를 관리·조작하는 종사자
- ⑥ 총무, 기획, 인사, 경리, 판매 등에 종사하는 자

8] 사업 실적 (종사자 4인 이하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①+②+③]							
① 인건비							
② 임차료							
③ 기타							
3. 영업이익 [1-2]							

1. 영업활동(용역제공 등)으로 획득한 수익

2.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매출원가성질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성질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재

- ①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의 총액
- ②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장비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③ 영업비용 중 ① 및 ② 이외의 모든 비용

9] 사업 실적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매출액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액							
2. 영업비용 [가 + 나]							
가. 매출원가 [①+...+⑤]							
① 인 건 비							
② 임 차 료							
③ 세 금 과 공 과							
④ 감 가 상 각 비							
⑤ 기 타							
나. 판매비와 관리비 [⑥+...+⑪]							
⑥ 인 건 비							
⑦ 임 차 료							
⑧ 세 금 과 공 과							
⑨ 감 가 상 각 비							
⑩ 대 손 상 각 비							
⑪ 기 타							
3. 영업이익 [1-2]							

1. 영업활동(용역제공 등)으로 획득한 수익

 ◆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있는 사업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획득한 수익만 별도 기입

2.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성질의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성질의 비용으로 크게 나눈 후,

 가. 상품구입과 용역제공 등 매출액창출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나.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유지에 소요된 비용

 ① ⑥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의 총액

 ② ⑦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 토지, 장비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③ ⑧ 2000년도에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의 합계

 ④ ⑨ 고정자산의 사용, 시간의 경과, 진부화 등으로 인해 소모된 경제적 가치

 ⑤ 매출원가 중 ①~④ 이외의 모든 비용

 ⑩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대여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액으로 처리된 비용

 ⑪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관리비 중 ⑥~⑩ 이외의 모든 비용

3. 영업이익 = [1. 매출액] - [2. 영업비용]

※ 결산서 작성 사업체는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 기재

㉩ 납부부가가치세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금 액								백만
-----	--	--	--	--	--	--	--	----

☞ 2000년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으로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수입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만 해당) (단위 : 원)

1. 전세·보증금(원)	① 전 세 금							백만
	② 보 증 금							백만
2. 임 대 료 수 입								백만

1.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대가로 지불한 전세금이나 보증금
2. 토지·건물·장비 등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획득한 수익(손익계산서 영업외수익 항목의 임대료)

㉫ 사업체건물연면적 (단위 : 평)

연 면 적	① 소 유	② 임 차	③ 무 상	합 계

☞ 사업체건물의 연면적(3.3㎡=1평)

비고	*휴업 등 사업체의 특이사항 기재
<p>※ 조사표 항목 중 7항 또는 8항 "사업실적" 작성근거(해당번호에 √표시)</p> <p>① 결산서 ② 결산서이외 장부 ③ 응답자의 기억 ④ 기타()</p>	

13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1. 인터넷에 접속 PC 대수						대			
2. 정보통신기술(ICT) 운용인력						명			
3. 정보통신기술(ICT) 투자금액 (지난 1년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원
4.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장애요인 (비중이 큰 두 가지만 √표시) ① ICT비용과다 ②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자주 비쌌 ③ ICT관련 서비스미흡 ④ 직원들의 ICT관련 기술부족 ⑤ ICT기술인력을 구하기 어려움 ⑥ 직원들의 ICT사용을 꺼림 ⑦ 기타()									
5. 전산장비 보유대수						(단위 : 대)			
① 대형서버	② 중형서버	③ 워크스테이션	④ PC서버	⑤ PC	⑥ 기타	합계			

1. 인터넷 접속된 PC 대수란 전세계의 컴퓨터 통신망을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원격접속, 전자우편, 파일전송, 월드와이드웹서비스가 가능한 것을 말하며 단지 사내 네트워크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2. 정보통신기술(ICT)이란 유·무선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부품, 데이터베이스, 시청각물 등에 관련된 분야로서 장비 뿐만 아니라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함
3. ICT 운용인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유지 활용하기 위한 순수인력을 말하며 조사표 입력, 운반·정리를 하기 위한 인력은 포함되지 않음
4. 전산장비 구분 기준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람
 - ① 메인프레임, 대형UNIX Server(슈퍼컴퓨터, 병렬처리시스템) 등 N/W(Network)상에서 하위레벨 500 Nodes 이상을 연결·가동할 수 있는 H/W
 - ② 중형UNIX Server로 N/W상에서 하위레벨 500Nodes 미만을 연결·가동할 수 있는 H/W
 - ③ 주로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며 컴퓨터그래픽, CAD 등의 기능이 있음
 - ④ 인텔ix86계열 Server로 NT, Novell Netware 등
 - ⑤ 인텔8088~80586급의 PC, 노트북 등
 - ⑥ 프린터, 스캐너, 플로터 등 부대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단말기 등

14 직종 및 학력별 종사자수

(단위 : 명)

학 력	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고졸이하
직 종						
계						
① 연구직						
② 기술직						
③ 기 타						

※ 종사자란 일용, 임시,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상시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 ① 연구직 : 연구소의 연구원 일부부서의 연구원으로 제품의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말한다.
 - 연구원 :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자. (또는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소지자 등) 연구개발활동 부서에서 행정,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과거에 연구원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도 포함
 - 연구보조원 : 연구원이 아닌 자중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측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보조하는 자
- ② 기술직 : 연구직과 생산직 중간에서 자격 및 학력에 관계없이 제품개발보완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③ 기 타 : 연구직과 기술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의 종사자(예 : 은행원, 교사, 학원강사, 자동차수리업종사자, 이·미용실종사자 등)

15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단위 : 원)

구 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 자체기술							
② 위탁기술							
③ 기술도입비							

1. 연구개발비 : 사업체에서 2000년 1년간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활동에 투입한 총지출로써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상의 경상연구비 및 연구개발비, 대차대조표상의 기술연구개발과 관련한 토지 및 설비취득을 기입

16 유형고정자산

(단위 : 원)

구 분	연초잔액					연간증가액					연간감소액					연간감가상각비					연말잔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합 계																														
① 토지																														
② 건물																														
③ 구축물																														
④ 기계장치 등																														
⑤ 차량·운무동																														
⑥ 기타																														
⑦ 건설중인 자산																														

- ① 토지 : 사업장 및 사무소의 대지와 운동장, 기숙사, 사택 등의 대지
- ② 건물 :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 및 승강기, 냉방·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
- ③ 구축물 : 도로, 교량, 담장, 굴뚝, 수조탱크, 송유관 등
- ④ 기계장치 :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설치물
- ⑤ 차량 운반구 : 차량, 선박, 항공기 등
- ⑥ 기타 : 1년이상 내구성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
- ⑦ 건설중인 자산 : 업무용 유휴지의 건설 및 구입을 위해 지출하는 재회 노무비 경비 등을 원형에 이르기까지 일시 차하는 계정

17 무형자산

(단위 : 건, 원)

구 분	건 수	연 말 잔 액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합 계							
① 산업재산권							
② 저작권							
③ 소프트웨어							
④ 기타()							

- ①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4개 부문의 무형자산을 말함
 - ② 저작권 : 문학·연극·음악·예술 및 기타 지적·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저작권자도 포함됨
 - ③ 소프트웨어 : 모든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로서 자체개발과 외주개발, 소프트웨어 중간 재구입, 외부 구입을 포함함
 - ④ 기타()는 영업권, 차지권, 창업비등으로 기타 무형자산 명을 구체적으로 기입
- ※ 무형자산은 연초잔액에 연간증가액을 더하고 연간감소액과 당기상각액을 뺀 연말잔액을 기입